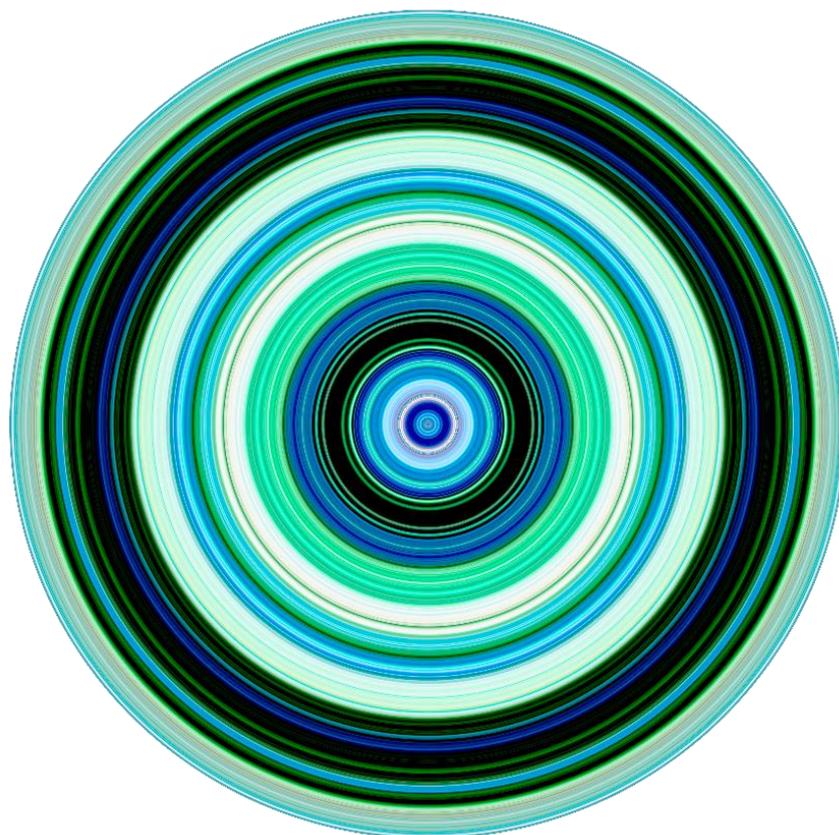


Deloitte.



2023.07 | 창간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국내 KOSPI 200 기업지배기구 관련
현황 정보를 분석하고 주요 규제 동향을 담아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I. 이사회 주요 현황 – KOSPI 200 기업을 중심으로 • 04

- ① 이사회 구성 • 05
- ② 이사회 내 위원회 • 08
- ③ 이사회 안건 • 14
- ④ 이사회 회의 • 16
- ⑤ 이사회 성 다양성 • 18
- ⑥ 사외이사 전문성 • 20
- ⑦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 22
- ⑧ 이사회·위원회·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 • 24
- ⑨ 사외이사 보수 • 28
- ⑩ 사외이사 교육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 31
- ⑪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 37
- ⑫ 결언 • 41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 42

- ① 회계제도 보완방안 마련 -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회계제도 보완 • 42
- ②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 50
- ③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 53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본 센터의 다양한 발간물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 이사회 주요 현황

이사회 주요 현황 - KOSPI 200 기업을 중심으로

요약

-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기업 이사회 역할이 강조되면서 효과적인 이사회 구성이나 운영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하는 시기가 되었음
- 이에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유가증권 상장법인 코스피 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과 관련한 공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자 함

배경

- 이사회는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기업지배기구를 연결하는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중임
 - 기업의 경영활동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모이고 주요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곳이 이사회이며, 기존 기업에 존재했던 기구이지만 새로운 의미를 갖게되는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가 되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유가증권시장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와 연관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섹션의 공시 항목들을 조사해보고 의의를 고찰하고자 함
 - 분석대상인 KOSPI 200 기업은 국내 산업별 대표기업으로 구성된 선도기업군이지만 국내에서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와 유관한 공시 정보 분석자료는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함
 - 더불어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국내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와 관련한 다음의 기본 공시 정보항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활용하여 센터 고유의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함

KOSPI 200 기업 이사회와 관련한 공시 정보 분석 항목

- | | |
|--------------|-------------------------|
| 1. 이사회 구성 | 7.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
| 2. 이사회 내 위원회 | 8. 이사회·위원회·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 |
| 3. 이사회 안건 | 9. 사외이사 보수 |
| 4. 이사회 회의 | 10. 사외이사 교육 |
| 5. 이사회 성 다양성 | 11.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6. 사외이사 전문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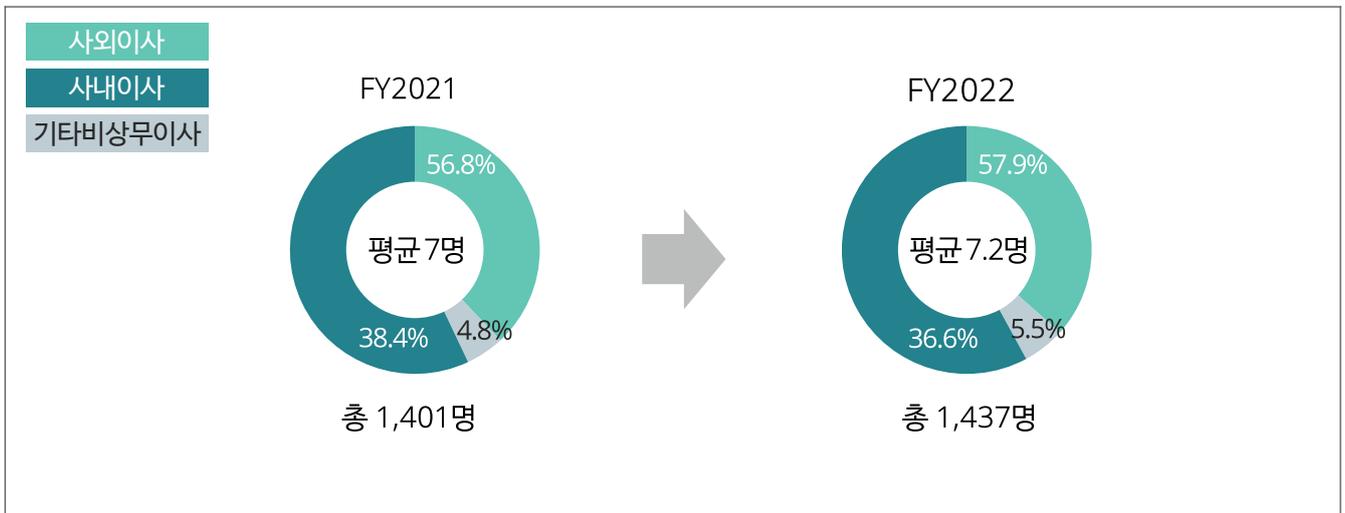
I. 이사회 주요 현황

1. 이사회 구성

국내 이사진 구성 현황

- 주식회사의 이사는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제한은 없으며 이사의 임기에 대하여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음¹⁾
 - 회사는 정관에 임기관련 규정이 '3년' 인 경우에는 매 이사별 3년의 임기로 선임하고, '3년 이내' 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별 임기를 달리하여 선임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사외이사의 경우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으며,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사외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야 가능함²⁾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는 평균 7.2명으로 구성되며 전기대비 0.2명 증가함
 - 사외이사(57.9%), 사내이사(36.6%) 및 기타비상무이사(5.5%)의 비중을 가짐
 - 사외이사의 경우 전기대비 1.1%p 구성비중이 상승함

<그림 1> FY2021 vs. FY2022 KOSPI 200 이사회 구성³⁾



1) 상법 제383조

2)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제7호

3) FY2022/FY2021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임원 정보 참고

I. 이사회 주요 현황

1. 이사회 구성

- FY2021-FY2022간 KOSPI200 기업의 이사진 구성에서 사외이사의 수가 사내이사의 수보다 큰 기업 수가 증가함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중 이사진 구성에서 사내이사 수가 사외이사 수가 큰 기업은 20사(10.0%), 사내이사 수와 사외이사 수가 같은 기업은 15사(7.5%), 사내이사 수가 사외이사 수보다 작은 기업은 165사(82.5%)임
 - FY2021 기준 KOSPI 200 기업 중 이사진 구성에서 사내이사 수가 사외이사 수가 큰 기업은 31사(15.5%), 사내이사 수와 사외이사 수가 같은 기업은 11사(5.5%), 사내이사 수가 사외이사 수보다 작은 기업은 158사(79%)임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98년 2월 사외이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이전 대기업의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통제하여 자의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던 관행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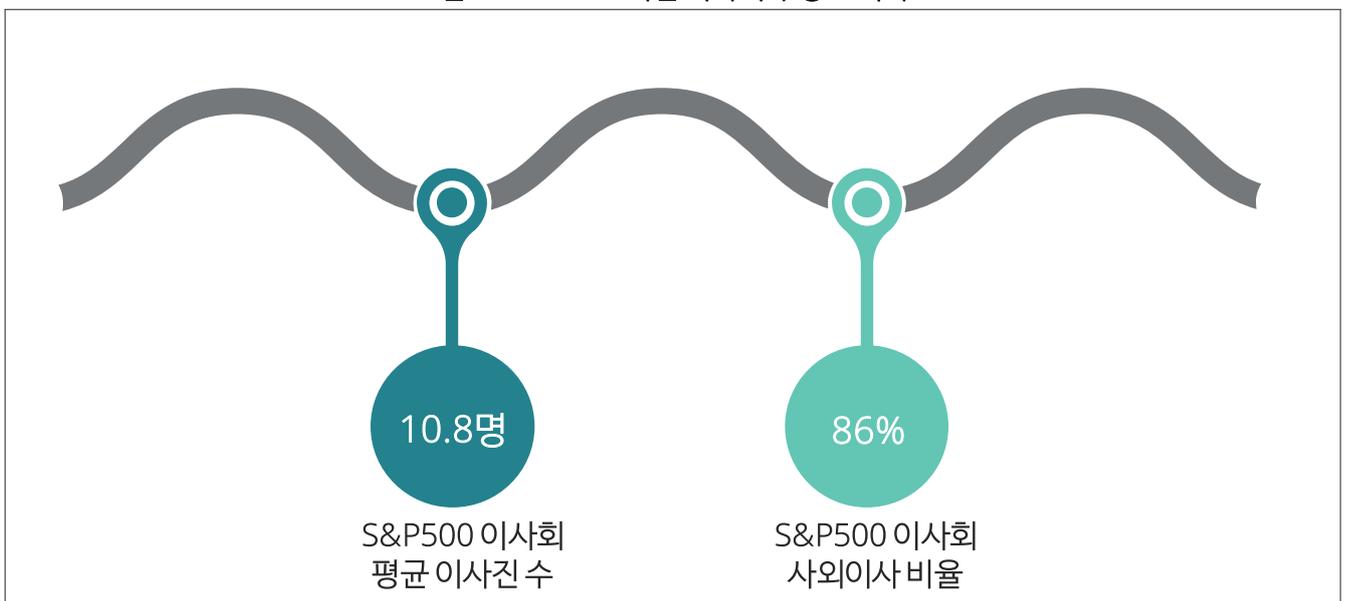
I. 이사회 주요 현황

1. 이사회 구성

글로벌 이사진 구성 현황

- S&P500 기업의 이사회는 평균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⁴⁾
 - 사외이사의 비중은 86%에 달하며 평균적으로 9.3명의 사외이사와 1.5명의 사내이사로 구성됨

<그림 2> S&P500 기업 이사회 구성 도식화⁵⁾



- 이사회의 적정규모는 어느 선인가? ⁶⁾
 - 미국: 7~9인 규모의 이사회가 바람직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연구결과가 있음
 - 독일: 12~14인 규모의 감사회⁷⁾ 구성이 효율성 측면에서의 상한선으로 제시되는 연구결과가 있음
 - 이사진의 규모보다는 사외이사의 효율적 역할 수행 결과에 근거하여 이를 지원하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4,5) SpencerStuart, 「Board Index」, 2022.04

6) 김화진, 「이사회 경영 - ESG와 기업지배구조」, 2022.03

7) 독일 대부분의 기업은 노동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포함된 감사회(Supervisory board)와 직장협의회를 통해 노사 공동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 7

I.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내 위원회

국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법규

- 상법에서는 1999년 12월 이사회 내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⁸⁾
 - 이사회 내의 위원회제도는 이사의 수가 많아 이사가 분산된 대규모 회사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부담을 감소시키고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임
 - 이사회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과 신속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그 하부조직으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법에서 명시하는 위원회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표 1> 이사회 내 위원회 권한위임 및 설치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제외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를 통해 위원회를 하나의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사회 내의 위원회가 위임 받은 권한의 범위에서 결의를 하면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시되나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결의할 수 있음¹⁰⁾
- 요약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의 취지는 회사의 규모가 대규모 일수록 이사의 수는 늘어나서, 이사의 수가 많은 회사의 경우에 모든 이사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방대한 사항을 이사회를 통하여 전부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고려된 것임
 - 이사회 내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권한 중에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8) 상법 제393조의2

9) 상법 제393조의2 제1항, 제2항

10) 상법 제393조의2 제4항

I.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내 위원회

- 관계 법규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유형은 상법과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최소총원과 최소 사외이사 비중 등을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음

<표 2> 법규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 유형

성별		위원회 명	최소 사외이사 비중	비고
상법	제542조의11 동법시행령 제37조	감사위원회	3분의 2 이상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제542조의8 동법시행령 제34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과반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6조,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과반수	금융회사
	제16조, 제19조	감사위원회	3분의 2 이상	
	제16조	위험관리위원회	과반수	
	제16조, 제14조	보수위원회	과반수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회사

I.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내 위원회

국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동향

- FY2022기준,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대개 감사위원회(25.8%), 후보추천위원회(24.2%)가 기본적으로 설치되고 ESG위원회(18.2%), 보수/보상위원회(12.4%) 및 내부거래위원회(10.1%)가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¹¹⁾
 - 국내 금융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함 ¹²⁾
 - 후보추천위원회 예시: 임원후보/이사후보/회장부호/대표이사후보/그룹임원후보/자회사대표후보/계열사 대표 후보추천위원회를 포함
 - ESG위원회의 경우 최근 2-3년간 기존 거버넌스/지배구조위원회를 대체하거나 신규 설치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전기대비 3.9%p (31사) 상승함
 - 경영위원회는 정도경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및 미래전략위원회 등을 포함함
 - 보수/보상위원회는 보수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및 인사보상위원회 등을 포함함

<표 3> FY2022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중 ¹³⁾

구분	감사 위원회	후보추천 위원회	ESG 위원회	보수/보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위험/리스크 관리위원회	경영 위원회	거버넌스/ 지배구조 위원회	기타 위원회	소계
위원회 수	176	165	124	85	69	23	19	5	17	683
비중	25.8%	24.2%	18.2%	12.4%	10.1%	3.4%	2.8%	0.7%	2.4%	100%

<표 4> FY2021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중 ¹⁴⁾

구분	감사 위원회	후보추천 위원회	ESG 위원회	보수/보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위험/리스크 관리위원회	경영 위원회	거버넌스/ 지배구조 위원회	기타 위원회	소계
위원회 수	173	166	93	78	73	23	27	6	13	652
비중	26.5%	25.5%	14.3%	12.0%	11.2%	3.5%	4.1%	0.9%	2.0%	100%

11)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제542조의11

12)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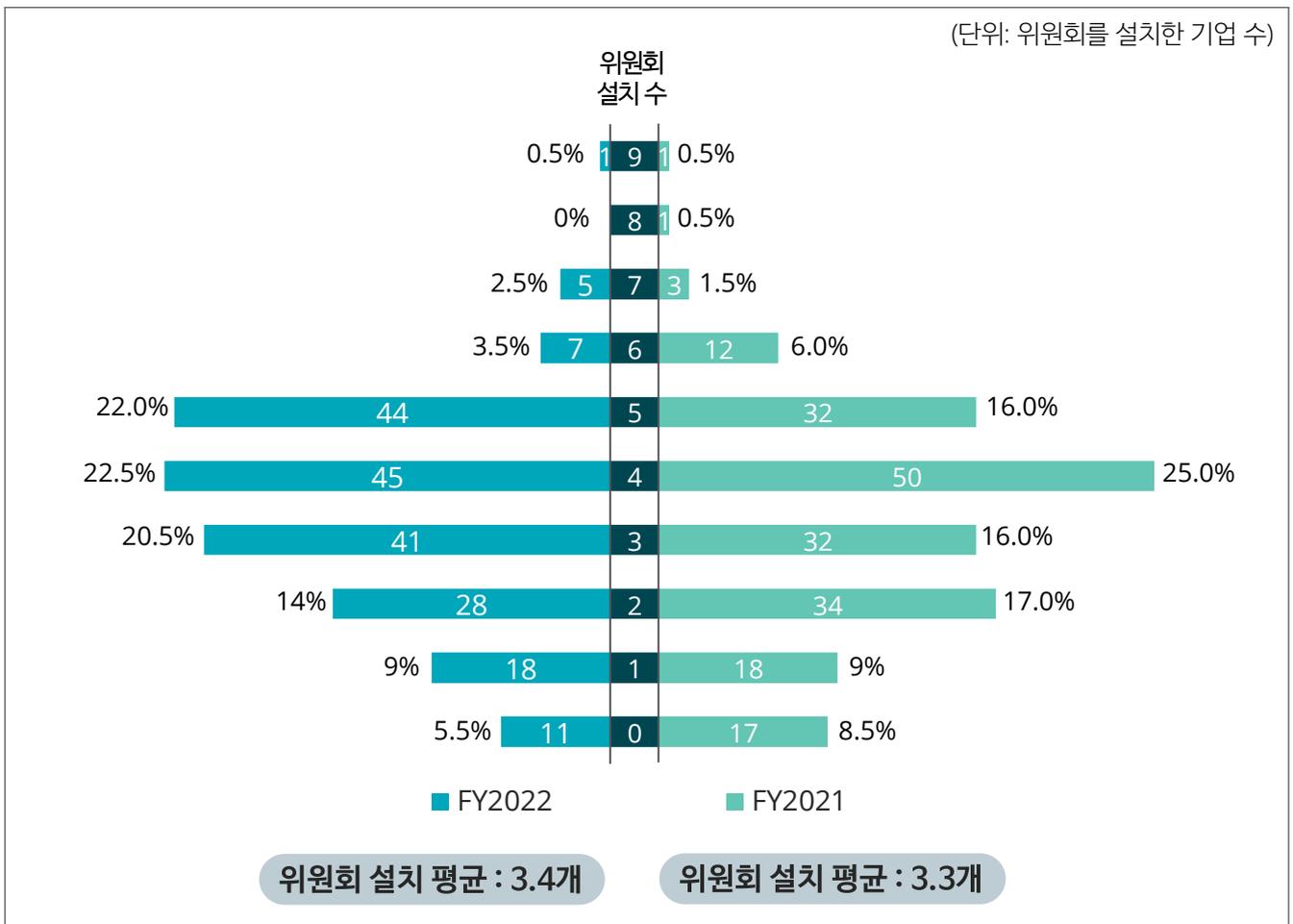
13,14)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및 FY2021 KOSPI 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정보를 참고함

I.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내 위원회

- FY2022기준, KOSPI 200 기업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평균은 3.4개이며 전기대비 0.1개 상승함
 -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기업은 11사로 전기대비 6사 감소함

<그림 3> FY2022 vs. FY2021 KOSPI 200 기업 위원회 설치 수 분포 ¹⁵⁾



15)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및 FY2021 KOSPI 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정보를 참고함

I.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내 위원회

국내 사외이사의 위원회 위원 겸직 추이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의 위원회에 참여한 사외이사는 총 822명으로 전기대비 19명(2.4%p) 증가하였으며, 사외이사가 겸임하는 위원회 위원직은 1인 평균 2.5개로 전기대비 0.1개(2.5%p) 증가함
 - FY2022 기준, KOSPI 200 동일 회사 내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 직책은 2,052개이며 FY2021의 경우 1,958개임
 - FY2021 기준, KOSPI 200 기업의 개별 사외이사가 겸임하는 위원회 위원 직은 평균 2.4개임

<표 5> FY2022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내 위원회사외이사 수 (겸직 수 포함)¹⁶⁾

구분	감사 위원회	후보추천 위원회	ESG 위원회	보수/보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위험/리스크 관리위원회	경영 위원회	거버넌스/ 지배구조 위원회	기타	소계
사외 이사 수	573	487	393	227	199	63	53	20	37	2,052
비중	27.9%	23.7%	19.1%	11.1%	9.7%	3.1%	2.6%	1.0%	1.8%	100%

<표 6> FY2021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내 위원회사외이사 수 (겸직 수 포함)¹⁷⁾

구분	감사 위원회	후보추천 위원회	ESG 위원회	보수/보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위험/리스크 관리위원회	경영 위원회	거버넌스/ 지배구조 위원회	기타	소계
사외 이사 수	560	484	304	210	218	62	65	23	32	1,958
비중	28.6%	24.7%	15.6%	10.7%	11.1%	3.2%	3.3%	1.2%	1.6%	100%

16,17)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및 FY2021 KOSPI 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임원정보를 참고함

I.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내 위원회

글로벌 이사회 내 위원회 동향

- 글로벌 이사회 의 경우 설치 된 위원회의 빈도는 감사위원회(100%), 보수/보상위원회(100%), 후보추천/거버넌스위원회(99.8%), 재무/내부거래위원회(28%) 및 경영위원회(25%)순으로 나타났음 ¹⁸⁾
- 글로벌 이사회 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인 감독 기능은 개별 특정 이슈 및 영역별로 이사회 전체 또는 소속 위원회 간 분장 되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 경우 재무 리스크를 포함,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관리·감독하는 주 담당 조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주주제안 및 주주활동과 관련한 아젠다는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거버넌스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표 7> 글로벌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의 담당 아젠다 ¹⁹⁾

감독 아젠다 (중복 응답 포함)	감사위원회	보수/보상위원회	후보추천 위원회 또는 거버넌스위원회	위험/리스크관리 위원회
전사적 리스크관리(ERM)	50%	1%	4%	18%
기후변화, 물, 그 외 환경	5%	1%	58%	9%
정치후원금	2%	-	47%	-
지역사회 영향/관계	1%	3%	45%	2%
인적자본/인력/인재	2%	75%	9%	-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EI)	1%	66%	24%	-
기업문화	1%	29%	14%	-
주주제안	1%	4%	71%	1%
주주활동	1%	11%	61%	-
사이버보안	61%	1%	2%	16%
기술전략	29%	-	2%	10%
기업 컴플라이언스·윤리의식	57%	5%	32%	6%
법률 및 규제	44%	4%	22%	9%

18) SpencerStuart, 「Board Index」, 2022.04

19) Deloitte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Back to basics: Board committees」, 2022.06

I. 이사회 주요 현황

3. 이사회 안건

국내 이사회 안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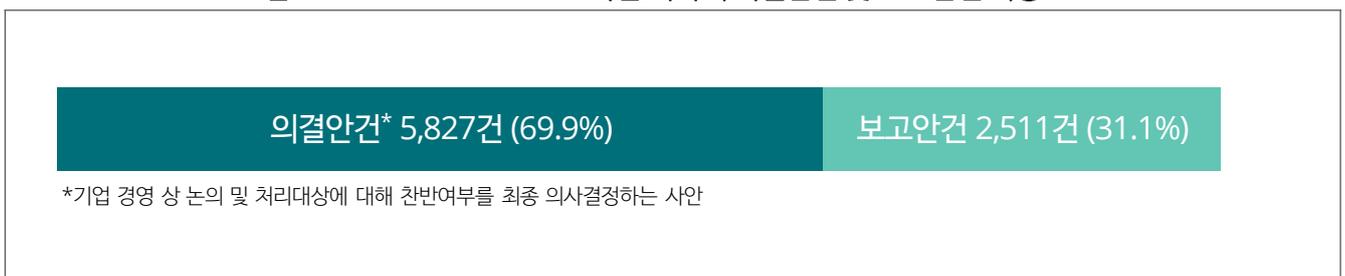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주요 업무집행 사항을 의결 하고 최고경영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업지배기구이기 때문임
- FY2022 KOSPI 200 기업 이사회 총 안건 8,338건 중 사업·경영 안건 비중(32%)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차순위로 인사(18.4%), 특수관계거래(특수관계자, 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거래 등, 15.3%), 자금(조달/대여, 8.6%) 및 규정·정관(6.2%)의 순으로 나타남

<표 8> FY2022 KOSPI 200 기업 이사회 안건 수 및 비중²⁰⁾

구분	안건 건수 및 비중(%)												
	사업·경영		특수관계거래		인사		자금		규정·정관		기타		소계
소계	2,665	32%	1,275	15.3%	1,531	18.4%	720	8.6%	518	6.2%	1,629	19.5%	8,338 (100%)

- 이사회 의결안건에 속하면서 ESG와 관련한 안건은 239건(2.9%)으로 나타나 최근 중요하게 다뤄지는 안건임을 확인함
 - 안건예시: ESG위원회 구성/위원 선임, ESG 규정 개설했/개정, 환경경영/정책 등
- 의결안건 비중은 69.9%(5,827건) 및 보고안건 비중은 31.1%(2,511건)를 차지함

<그림 4> FY2022 KOSPI 200 기업 이사회 의결안건 및 보고안건 비중²¹⁾



20,21)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KOSPI 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안건 정보를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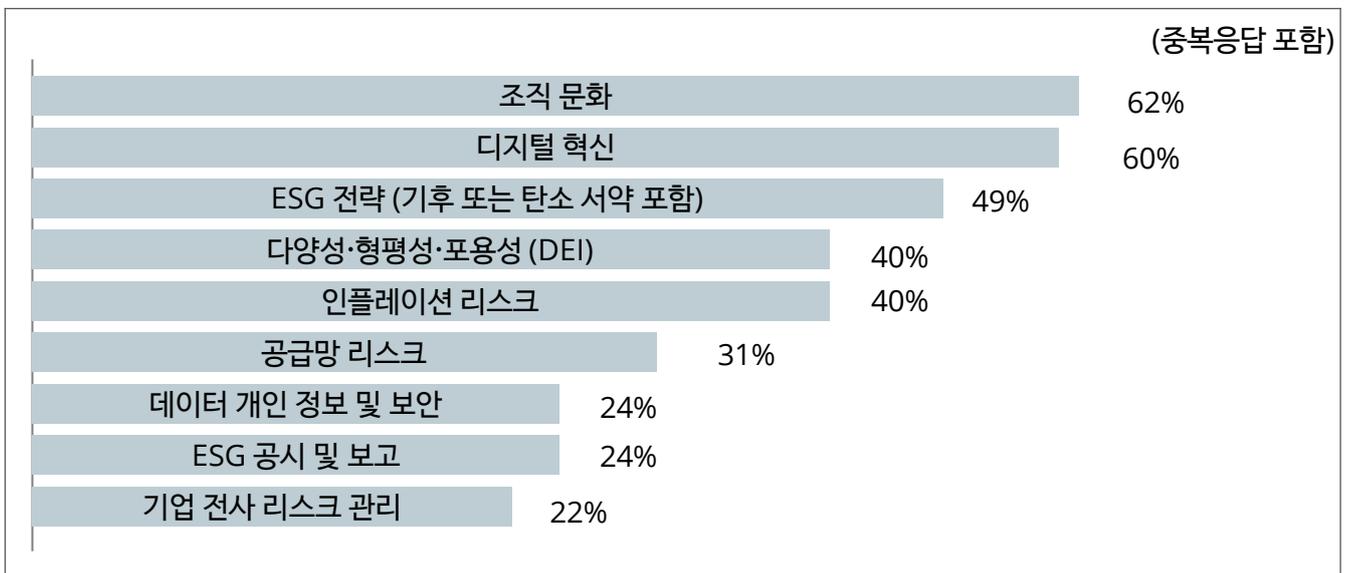
I. 이사회 주요 현황

3. 이사회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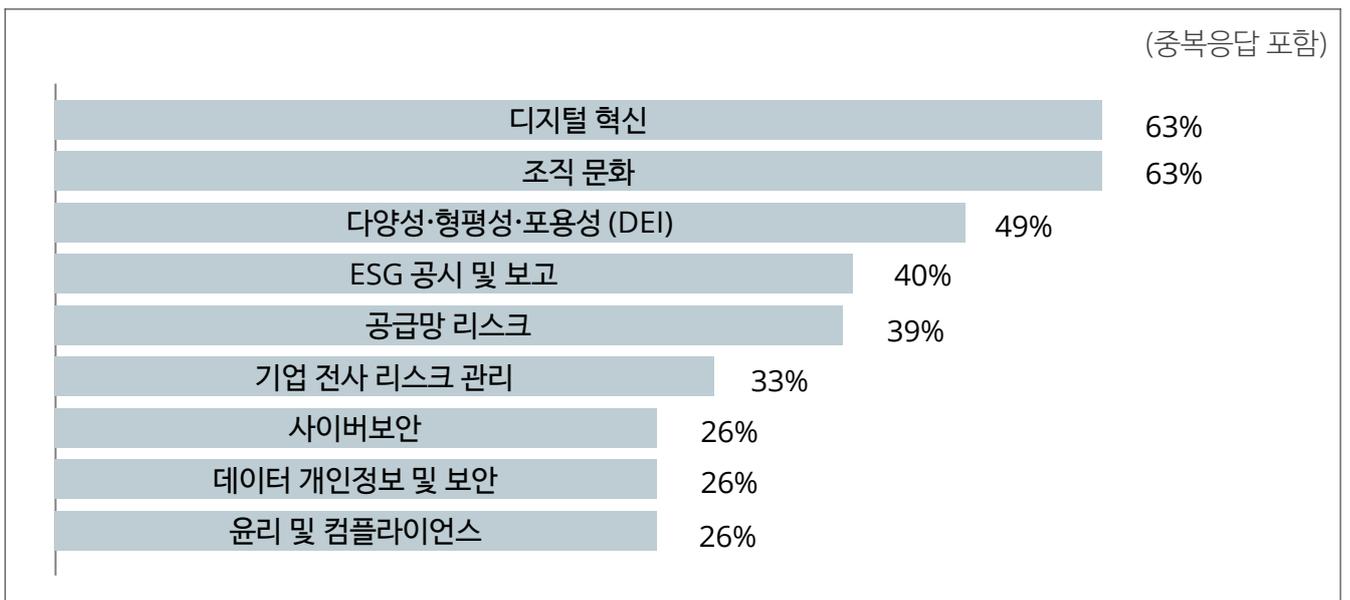
글로벌 이사회 안건 비중

- 글로벌 이사회 의 경우 ‘조직 문화’ 및 ‘디지털 혁신’ 이 Top2 아젠다이며 전기대비 ESG를 키워드로 하는 아젠다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대표되는 경제 관련 아젠다가 부각되고 있음

<그림 5> FY2022 & 2023 이사회 안건 비중 ²²⁾



<그림 6> FY2021 & 2022 이사회 안건 비중 ²³⁾



22) Deloitte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3.01

23) Deloitte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01

I. 이사회 주요 현황

4. 이사회 회의

논의 배경

- 지배구조 모범규준 상,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연간 이사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권고되고 있으며 강조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이사회 의장의 리더십으로 이사회 멤버의 회의 참여 활성화
 - 회의록 작성 및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유지·보존
 - 이사회 감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 실시 권장
- FY2022 KOSPI 200 기업 이사회의 평균 회의 횟수는 11.07회, FY2021의 경우 11.13회로 변화가 미미함

<그림 7> FY2022 vs.FY2021 KOSPI 200 기업 이사회 평균 회의 개최 수 ²⁴⁾



<표 9>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사회 회의 - ● 이사회 리더십 >> 5. 이사회의 운영

구분	내용
5.2	• 이사회 의장은 적극적인 토론문화를 장려하고 이사회를 건설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4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연간 이사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권고한다.
5.5	• 이사회 및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이사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5.6	•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9	• 사외이사의 경영 감독·지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이사회와는 별도로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

24)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및 FY2021 KOSPI 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회의 개최 정보를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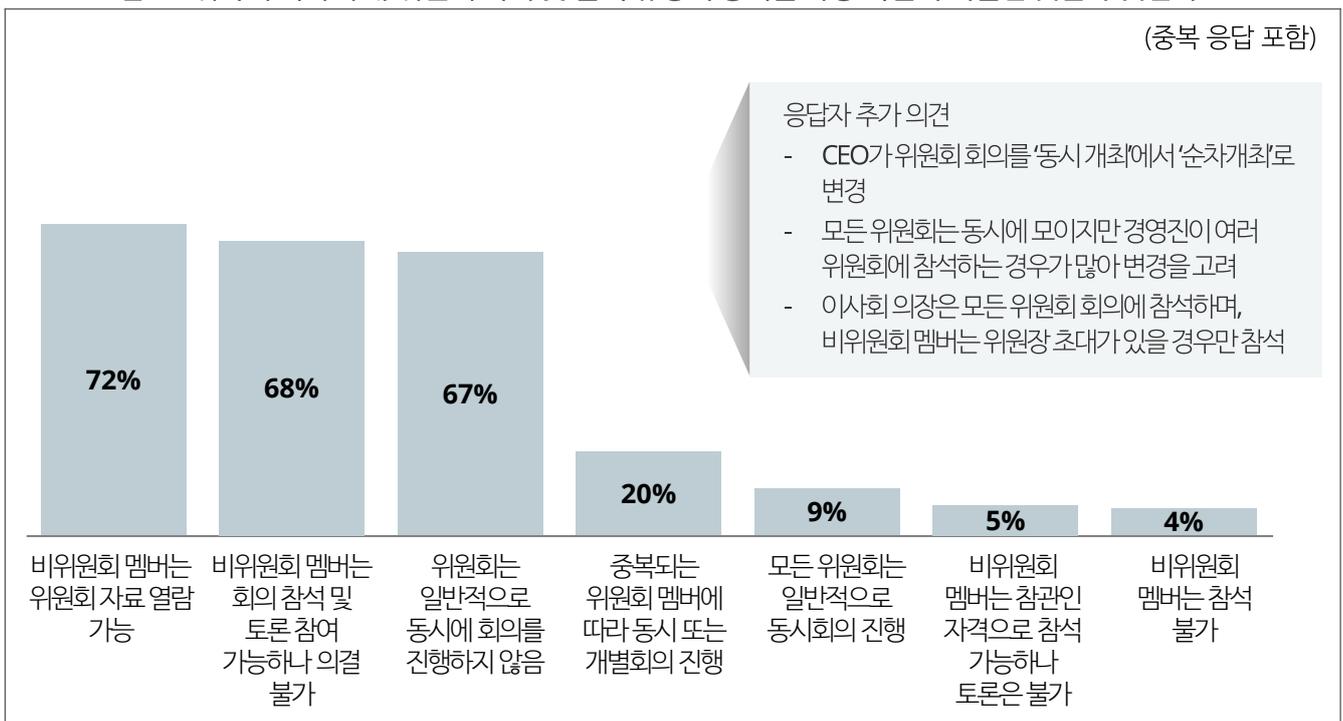
I. 이사회 주요 현황

4. 이사회 회의

글로벌 이사회 회의 동향

- S&P500 기업 이사회회의 연간 평균 회의 개최 수는 8.3회²⁵⁾로 나타났으나 이를 단순히 국내 이사회회의 평균 개최 수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소요시간 또는 진행방식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임
- 실무적 관점에서 글로벌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 형식은 ‘비위원회 멤버는 회의 참석 및 토론에 참여 가능하나 의결 불가’(68%) -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음’(67%)이 주된 흐름으로 보임

<그림 8> 귀사의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 및 출석 규정의 형식을 가장 적절히 기술한 것은 무엇인가? ²⁶⁾



25) SpencerStuart, 「Board Index」, 2022.04

26) Deloitte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Back to basics: Board committees」, 2022.06

I. 이사회 주요 현황

5. 이사회 성 다양성

국내 유가증권시장 여성 사외이사 비중

- 이사회에서 다양성 확보의 의미는 연령, 성별, 출신, 학력, 경험, 학력 등이 고려된 인물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임을 의미하며 실제 국내외로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고 있는 현실임
- 국내는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에 의해 2022년 8월 부터 시행되고 있음²⁷⁾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않아야 함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여성 사외이사의 비중은 18.9%로 전기대비 6.3%p 상승함
 - 2022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전체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10.9%로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는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규정 적용의 영향이 컸음

<표 10> FY2021-FY2022 유가증권시장 여성 사외이사 비중 추이²⁸⁾

구분	2021			2022			
	성별	사외이사 수(명)	비중	성별	사외이사 수(명)	비중	전기대비
KOSPI 200 상장법인	남	702	87.4%	남	667	81.1%	▼ 6.3%p
	여	101	12.6%	여	155	18.9%	▲ 6.3%p
	소계	803	100.0%	소계	822	100.0%	
유가증권 상장법인	남	1,966	92.3%	남	1,935	89.1%	▼ 3.2%p
	여	163	7.7%	여	236	10.9%	▲ 3.2%p
	소계	2,129	100.0%	소계	2,171	100.0%	

-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의미 있으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었음을 고려할 때, 여성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과 같은 의사결정 직책으로서의 진출은 미흡한 수준이며 적극적인 개선과 다양한 인식전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
- 더불어, 이사회의 성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외이사의 수에 연연하기 보다는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 요구됨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

28)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사업보고서 및 FY2021 사업보고서 상 공시된 임원 정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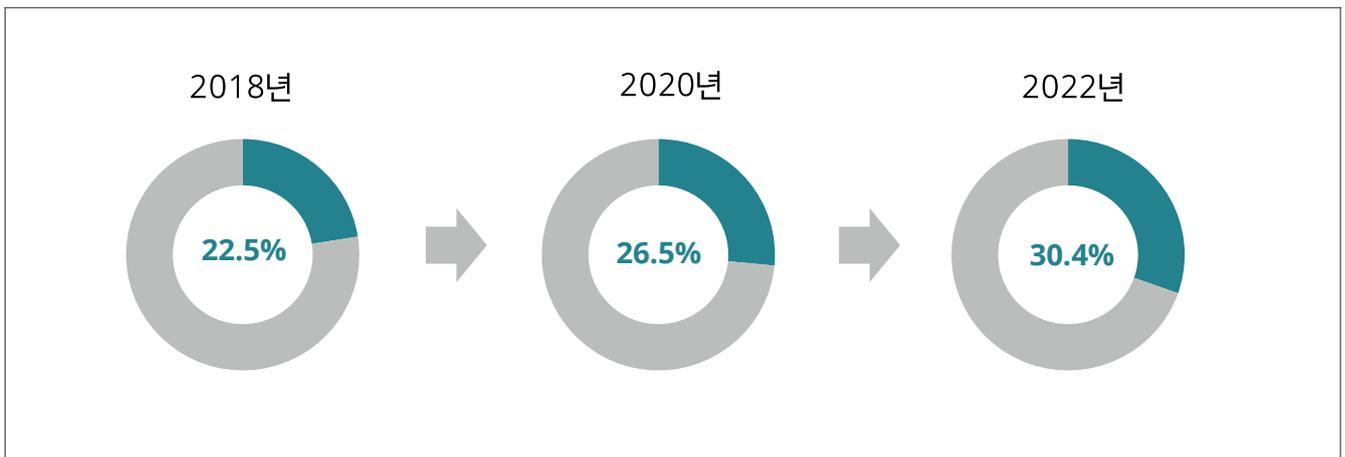
I. 이사회 주요 현황

5. 이사회 성 다양성

글로벌 Fortune 500 기업 이사회 성 다양성

- 글로벌 Fortune 500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임원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중은 30.4%로 2018년 수준 대비 7.9%p 증가함

<그림 9> Fortune 500 기업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중 추이 ²⁹⁾



- 최근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성별 균형 개선에 관한 지침³⁰⁾에 잠정적으로 합의함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중 최소 40%, 전체 이사 중 최소 33%는 과소 대표되는 성별이어야 함을 명시함
- 미국의 경우 Regulation S-K에서 기업의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다양성 정책과 그 평가에 관해 공시하는 정책을 시행중임

29) Deloitte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Missing Pieces Report: A board diversity census of women and underrepresented racial and ethnic groups on Fortune 500 boards, 7th edition」, 2023.06

30) European Organization of Military Associations and Trade Unions (EUROMIL),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the gender balance among non-executive directors of companies listed on stock exchanges and related measure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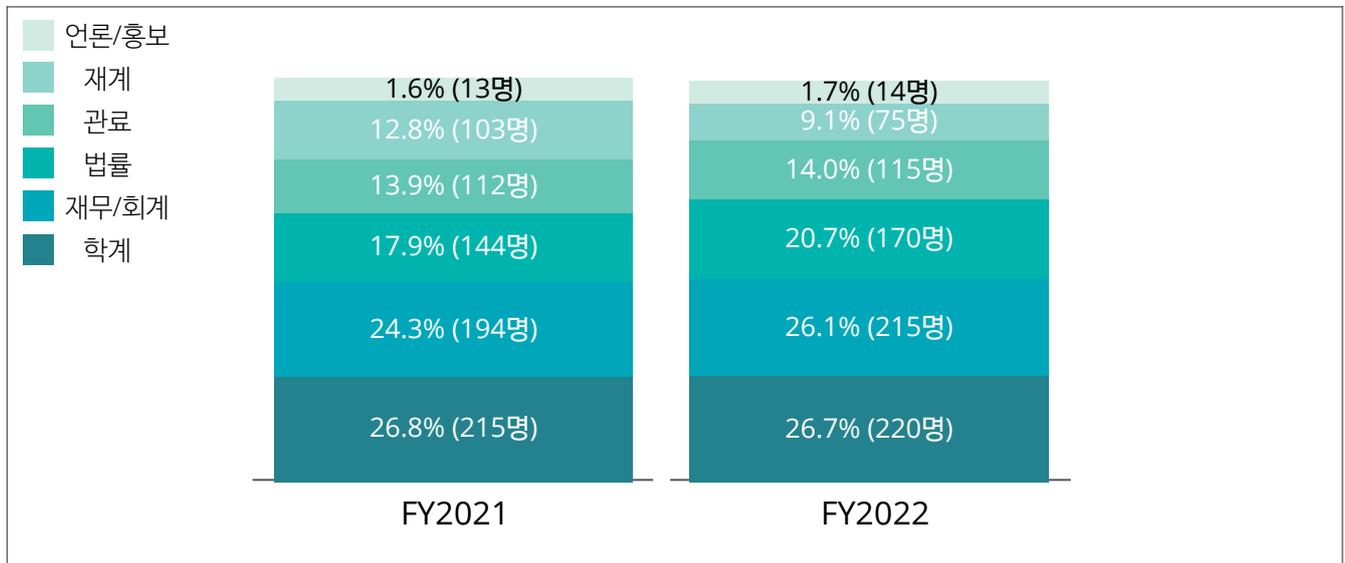
I. 이사회 주요 현황

6. 사외이사 전문성

국내 사외이사 전문성 분포

- 국내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함³¹⁾
 -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는 구체적으로 공인회계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무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전공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 등으로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³²⁾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의 사외이사 전문성 배경은 학계 (26.7%), 재무/회계 (26.1%), 법률 (20.7%), 관료 (14.0%), 재계 (9.1%) 및 언론/홍보 (1.7%) 순으로 나타났음
 - 전기 대비 재무/회계 전문가 비중은 1.8%p 상승하였고, 법률전문가 비중은 2.8%p 상승함

<그림 10>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 사외이사 전문성³³⁾



31) 상법 제542조의2 제2항 1호

32)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제2항

33)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1 및 FY2022 사업보고서 상 임원 정보를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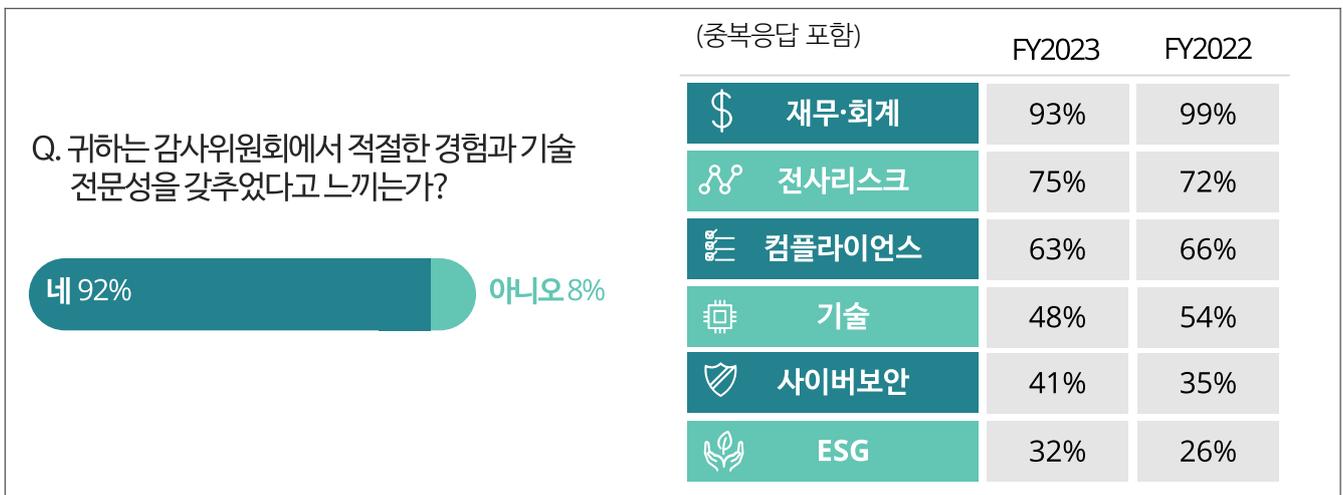
I. 이사회 주요 현황

6. 사외이사 전문성

글로벌 사외이사 전문성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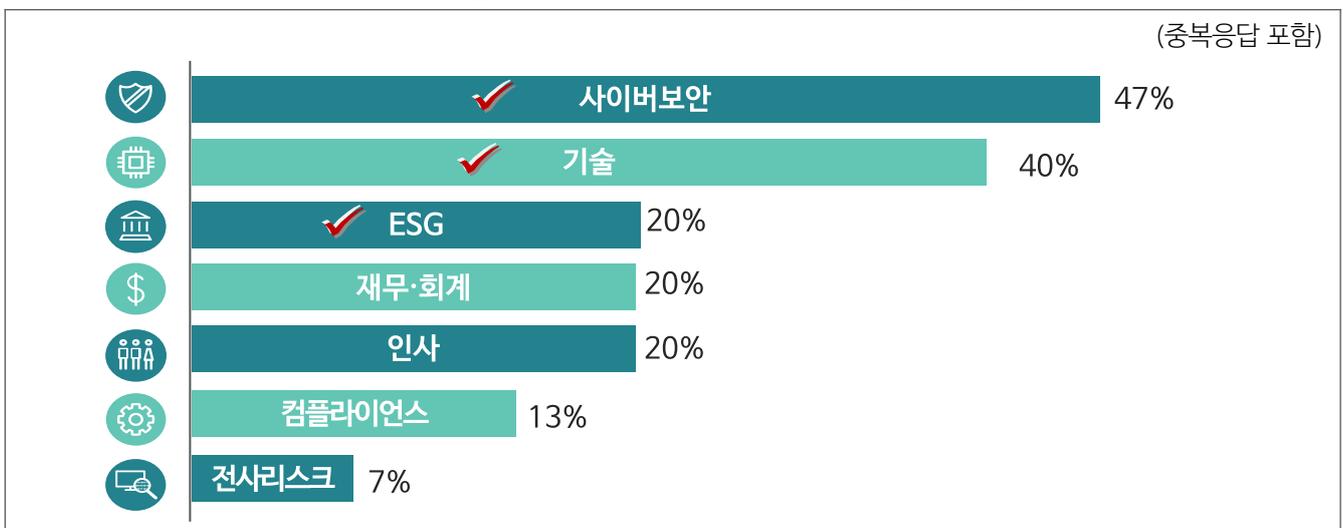
- 기존 핵심 감독 영역에 대한 글로벌 감사위원(사외이사)의 전문성은 갖춰져 있다고 고려하고 있음
 - 반면 기술, 사이버보안 및 ESG 관련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나 작년에 비해 사이버보안, ESG, 전사리스크의 전문성은 보완된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그림 11> 글로벌 사외이사(감사위원) 전문성 보유 현황 ^{34,35)}



- 상기의 사유로 신흥 리스크의 중요성 증대 등과 관련 있는 사이버보안, 기술 및 ESG 영역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그림 12> 이사회와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 보완 영역 ³⁴⁾



34) Deloitte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Priorities and Committee Composition」, 2023. 2022.08.~10.에 조사된 대규모 미국 기반 상장사(응답자의 80% 이상이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기업 소속) 감사위원 164명 대상

35) Deloitte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 246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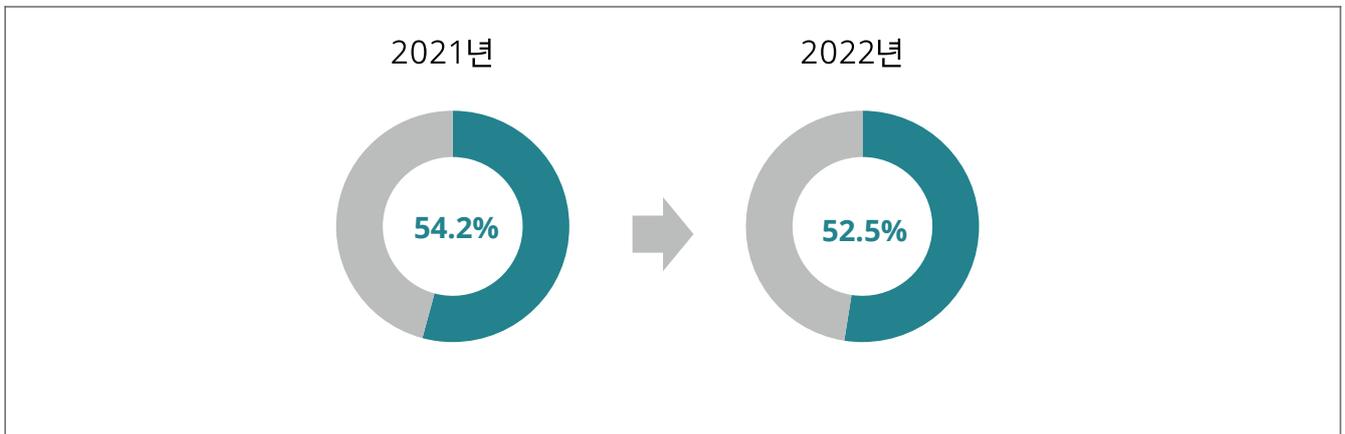
I. 이사회 주요 현황

7.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국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준수 현황

- 효과적인 내부통제정책 운영 및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권고되며 관련 정책 실행의 기반 마련을 위한 환경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임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 확보 권장 (지배구조 모범규준 IV.1.4)
 -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내부감사조직에 대한 직속 보고 체계 확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세부원칙 9 - ①))
- 2022년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KOSPI 200 기업의 52.5%만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미흡한 수준이며 전기대비 1.7%p 하락함
 - 본 지표에 대해 체감하는 준수 기준이 높아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고려됨

<그림 13>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준수율³⁶⁾



36) 2022년 및 2023년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KOSPI 200기업 중 일반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FY2021의 경우 166사, FY2022의 경우 168사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상 핵심지표 준수 요약표를 제공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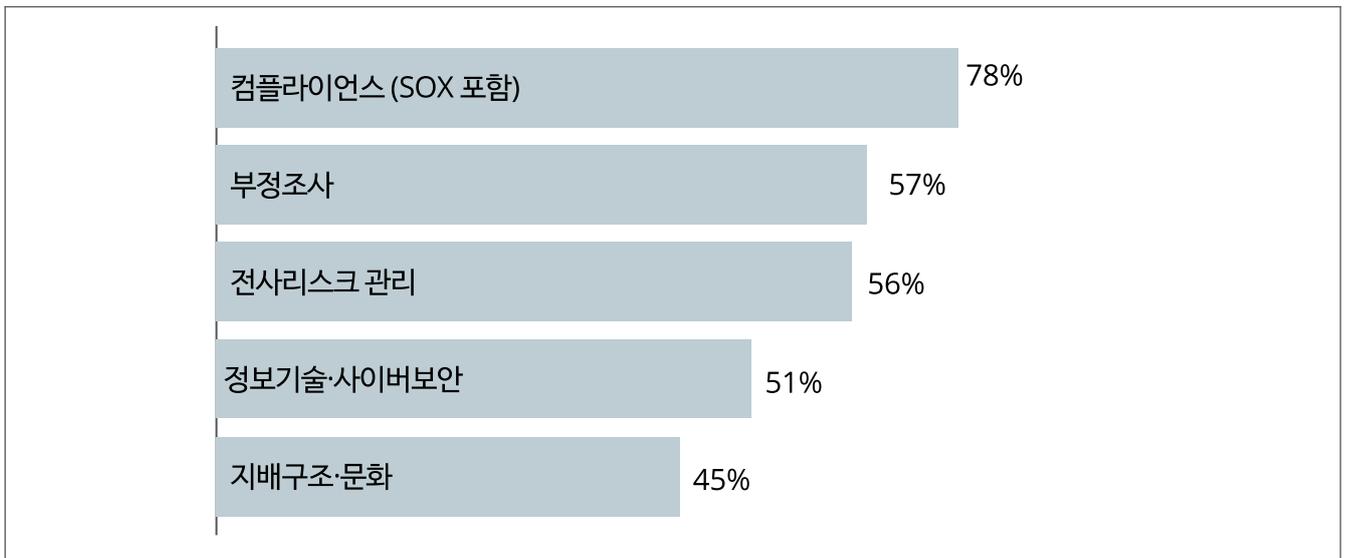
I. 이사회 주요 현황

7. 내부감사 독립성

글로벌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활동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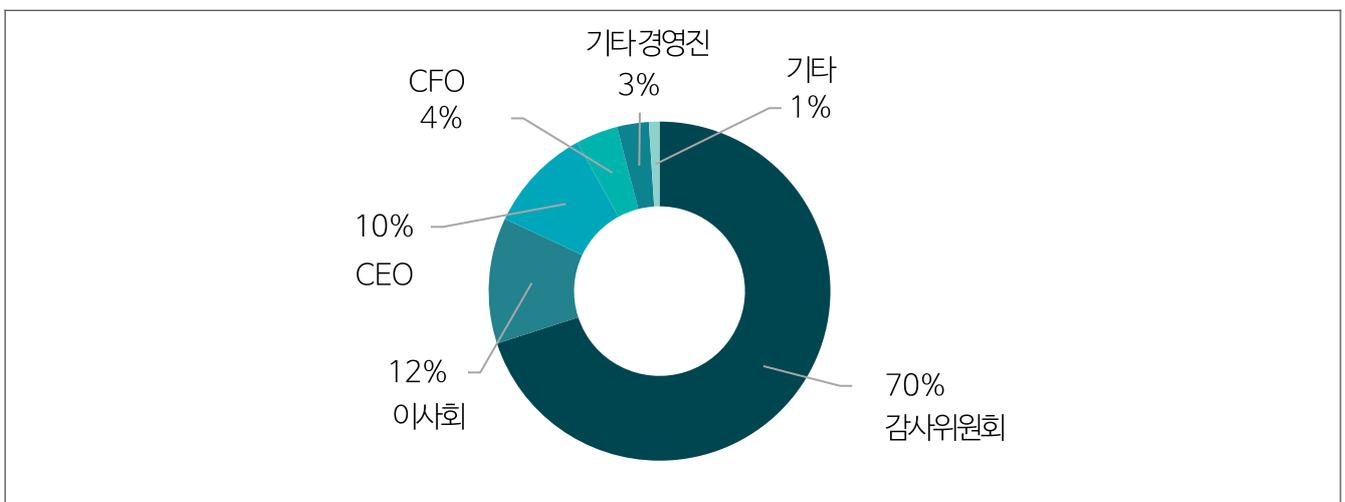
- 내부감사 활동은 SOX를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부정조사, 전사리스크 관리 및 정보기술 등으로 꼽히고 있음

<그림 14> 글로벌 내부감사부서 주요 활동 영역³⁷⁾



- 북미권역 감사위원회 응답자의 70%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능적 보고 라인을 감사위원회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5> 글로벌 내부감사부서 기능 보고라인³⁸⁾



37) Internal Audit Foundation, 「2022 Premier Global Research, Internal Audit: A Global View」, 2022, 159개국 내부감사인 3,631명 대상(이 중 33%는 CAE)

38) 상동, 북미 5개국 내부감사인 1,152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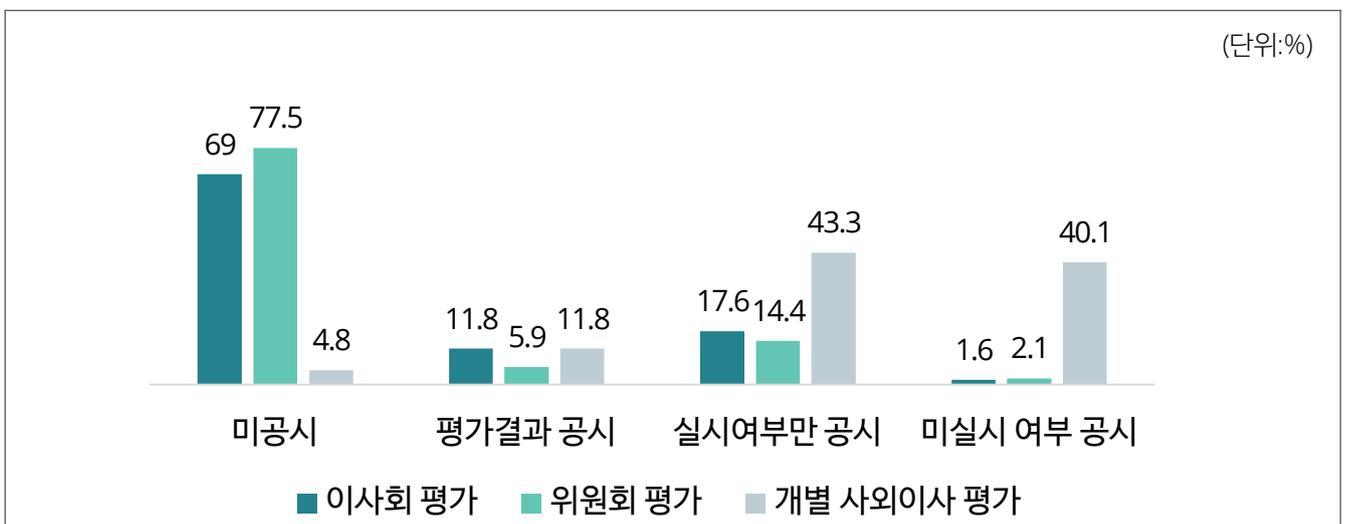
I.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위원회·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

국내 이사회·위원회·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 활동 동향

- 효과적인 이사회 감독 수행을 위해 이사회, 위원회 및 개별 사외이사 평가는 매우 중요한 항목임
- 국내에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³⁹⁾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여부와 평가하지 않았을 시 그 구체적 사유를 공시해야 함
 -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동 규범에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⁴⁰⁾
- FY2022기준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 위원회 및 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공시는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보이며 성과평가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실행이 미흡한 상황으로 고려됨
 - 성과평가활동에 대한 미공시 대상은 위원회(77.5%) 및 이사회(69%)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활동 미공시 비중은 (4.8%)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임
 - 성과평가 결과를 공시하는 부문에서는 이사회 평가(11.8%) 및 개별 사외이사 평가(11.8%)가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위원회 평가(5.9%)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성과평가 실시여부만 공시하는 부문에서는 개별 사외이사 평가(43.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사회 평가(17.6%) 및 위원회 평가(14.4%)가 뒤를 이음

<그림 16> FY2022 KOSPI 200 기업 이사회·위원회·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 활동 공시 사항 ⁴¹⁾



39)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제1항, 동 시행세칙 제7조의2 제1항

40)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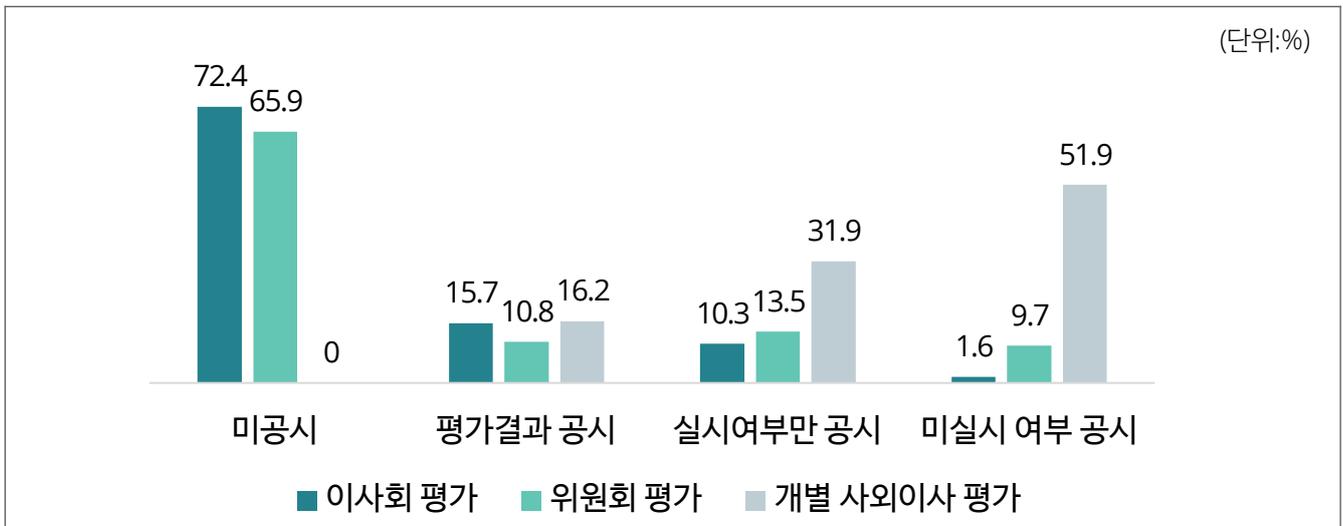
41)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187사를 분석 대상으로 함

I.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위원회·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

- FY2021 기준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 위원회 및 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공시도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보임
- 성과평가활동 대한 미공시 대상은 이사회(72.4%) 및 위원회(65.9%)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 미공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성과평가 결과를 공시하는 부문에서는 개별 사외이사 평가(16.2%), 이사회 평가(15.7%) 및 위원회(10.8%)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 성과평가 여부만 공시하는 부문에서는 개별 사외이사 평가(31.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위원회 평가(13.5%) 및 이사회 평가(10.3%)가 뒤를 이음

<그림 17> FY2021 KOSPI 200 기업 이사회·위원회·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활동 공시 사항⁴²⁾



42)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1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185사를 분석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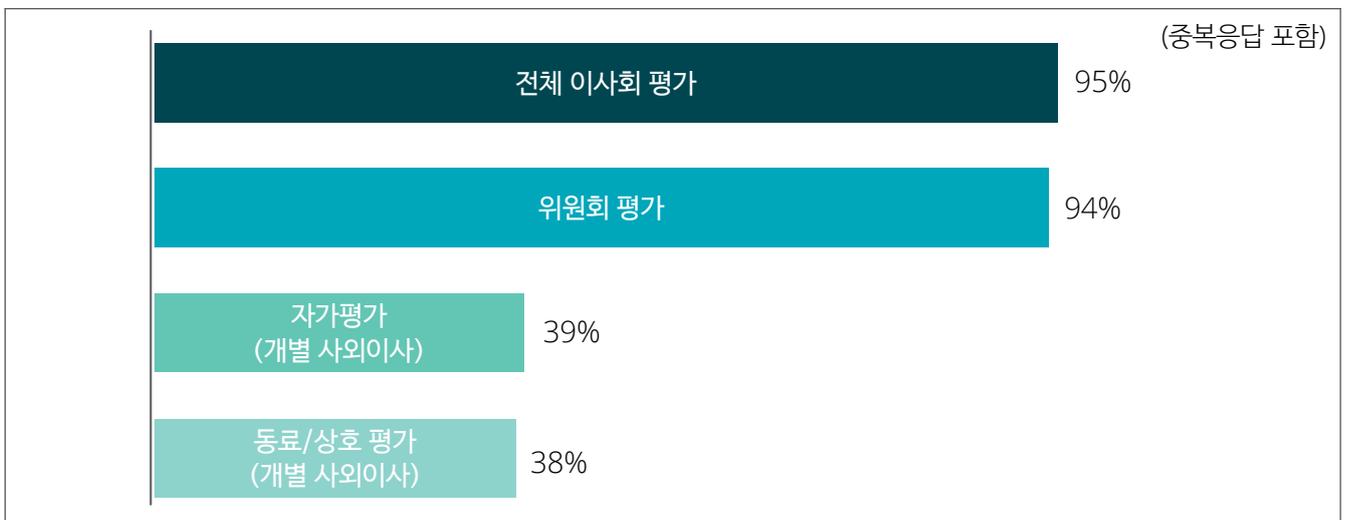
I.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위원회·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

미국 이사회·위원회·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 활동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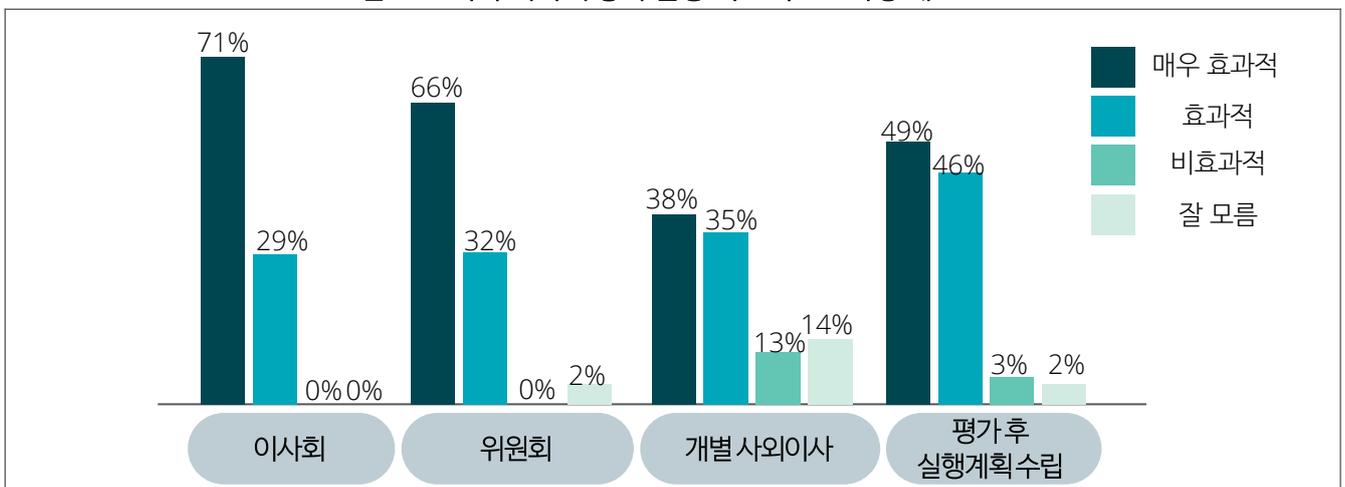
- 미국의 이사회 평가유형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위원회 및 개별 사외이사 평가로 나뉘며 평가의 주체는 이사회회장과 경영진의 두 축으로 양분되며 제3자 외부평가의 비중도 20%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8> 미국 이사회 평가 유형 ⁴³⁾



- 평가의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이사회 평가 후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이 강조됨
 - 95%의 응답자는 평가 후 실행계획의 수립도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평가주체에 의한 다양한 평가수단의 활용에 대해 이사회가 객관성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이해됨

<그림 19> 미국 이사회 평가 활동 피드백 - 효과성 제고 ⁴⁴⁾



43, 44) Deloitte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Best Practices Quarterly」, 2022.09

I. 이사회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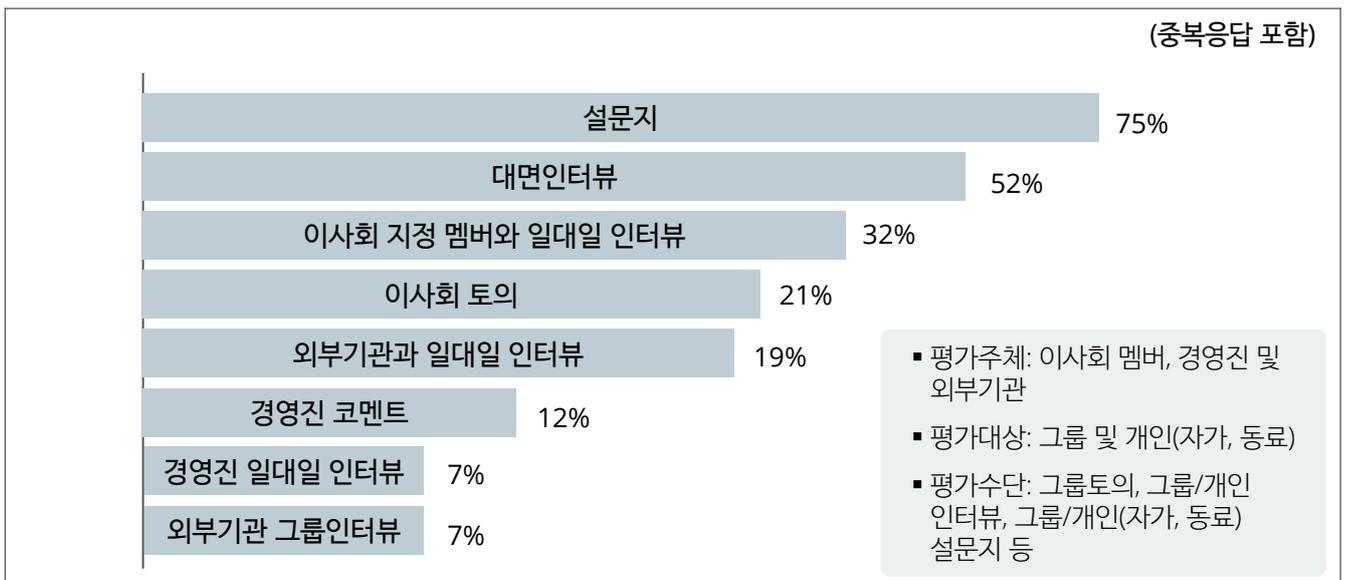
8. 이사회·위원회·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

- 이사회 평가항목으로는 업무의 적절성, 업무 이행의 충실성, 독립성, 전문성 항목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각 기업이 직면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절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 지면 설문지, 일대일 인터뷰, 그룹 인터뷰, 제3자 인터뷰 등이 활용될 수 있음

<표 11> 미국 이사회 평가 항목⁴⁵⁾

주요 평가 항목	비중 (중복 포함)
이사회 구성 - 인원, 선임, 승계계획, 오리엔테이션	96%
위원회 - 구성, 감독분야/범위, 위원장 및 멤버 임명 절차)	95%
회의 - 주기, 시간, 유형 (대면/비대면/혼합)	92%
회의자료 - 정보흐름, 보고, 회의 전 회람여부, 안건 설정)	91%
전문성, 경험, 역량, 다양성	88%
이사회 문화	86%
감독 책임	81%
이사회 운영	80%
이사회 리더십 - 의장 및 위원장	79%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	68%
...	

<그림 20> 미국 이사회 평가 수단⁴⁶⁾



45,46) Deloitte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Best Practices Quarterly」, 2022.09

I. 이사회 주요 현황

9. 사외이사 보수

국내 개별 사외이사 보수 추이

- 사외이사 보수의 개념은 회사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이고, 상여금, 퇴직금, 성과급 등의 명칭을 불문함⁴⁷⁾
 -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상도 마찬가지임
-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임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는 6,795만원이며 전기대비 4.2%p 상승함
 - 전체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 평균보수의 1.4배이며 자산규모나 매출규모에서 전체 상장법인 중 산업별 대표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반영한 보수수준이라 고려됨

<그림 21> KOSPI 200 기업 vs. 유가증권시장 사외이사 1인당 평균보수⁴⁸⁾

	KOSPI 200 상장법인			유가증권상장법인			
	FY2021	FY2022	전기대비	FY2021	FY2022	전기대비	
사외이사	6,519만원	6,795만원	4.2%p ▲	사외이사	4,558만원	4,798만원	5.3%p ▲
• 감사위원	6,692만원	7,100만원	6.1%p ▲	• 감사위원	4,926만원	5,286만원	7.3%p ▲
• 감사위원외 사외이사	6,177만원	6,374만원	3.2%p ▲	• 감사위원외 사외이사	3,929만원	4,064만원	3.4%p ▲

47) 대법원 2020.4.9.선고 2018다290436 판결

48)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유가증권시장 FY2022 및 FY2021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사외이사의 평균보수임

I. 이사회 주요 현황

9. 사외이사 보수

-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⁴⁹⁾
- 적법하게 결정된 보수액의 변경은 불가함⁵⁰⁾
 -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음
- 사외이사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상당한 선에서 책정되어야 할 것임
 - 사외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임
- 사외이사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사안 등과 관련하여 이슈가 될 소지가 있음
 - 사외이사직 유지를 위해 최고경영진과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음
- 보수 공시와 관련하여 임직원 중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공시해야 함⁵¹⁾

〈표 12〉 지배구조 모범규준: 사외이사 보수 - ② 이사회리더십〉 1. 이사회역할과 책임, 5. 이사회운영

구분	내용
1.10	• 이사회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 및 관행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그 주요사항과 주요 경영진의 보수는 공시되어야 한다.
1.11	• 이사회는 경영진 및 이사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시하고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5.11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별 이사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개별 이사의 평가결과는 보수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49) 상법 제361조에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함

50)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51)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3호의2

I. 이사회 주요 현황

9. 사외이사 보수

글로벌 사외이사 보수 추이

- 글로벌 사외이사 1인당 평균보수 수준은 국내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 사외이사의 경우 국내 대비 기업 경제규모 등의 차이로 인해 보수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국내 사외이사 대비 위원회 겸임 수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회의자로 검토, 비공식 회의, 외부감사인 및 유관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에 투입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22> 글로벌 기업 사외이사 1인당 평균보수 ^{52,53)}

상장법인 ⁵⁴⁾	FY2021	FY2022	전기대비
대형	\$ 294,167	\$ 300,000	2.0%p ▲
중형	\$ 236,000	\$ 238,500	1.1%p ▲
소형	\$ 185,833	\$ 195,000	4.9%p ▲

지급방법	현금 40%	주식 57%	기타
------	--------	--------	----

- 회사가 제시한 평가항목을 충족할 경우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e)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음

52) FW Cook, 「2021 Director Compensation Report」, 2021.11

53) FW Cook, 「2022 Director Compensation Report」, 2022.12

54) 대형 상장법인 시가총액 100억 USD 이상, 중형 상장법인 시가총액 20억 ~ 100억 USD 이상, 소형 상장법인 시가총액 20억 USD 이상

I. 이사회 주요 현황

10. 사외이사 교육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⁵⁵⁾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⁵⁶⁾에 따라 직무의 효과적 수행에 기반이 되는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적절한 감사위원회 교육을 제공해야 함
- 2022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KOSPI 200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내용에 대한 조사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교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교육⁵⁷⁾ 건은 별도로 기재하였고, 공시 서식 상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참고함

<표 1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구분	내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3.0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 대해 교육일시,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성명 기재) 및 불참한 감사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구체적인 교육내용 등을 기재한다. 교육을 여러 번 실시한 경우 일자별로 기재하고 교육 실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사실 및 그 사유를 기재한다.

<표 1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핵심지표 준수현황 작성 기준 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감사위원회 회의 안건에 대한 설명은 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 단순한 서면 교육자료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공은 제외하며 대면 교육 혹은 화상 강의 등 대면강의에 준하는 경우만 인정함

55) 한국ESG기준원,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2018.05.11(원칙), III.5.2(교육유형), III.5.3(교육내용)

56)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 2.5.10, 4.1.3

57) 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감사위원회 교육 인정 범위를 차용하여 단순 안건 설명, ②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관련 내용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교육(예: 미술, 심폐소생술 교육 등), ③ 교육일자 미기재 건은 교육으로 미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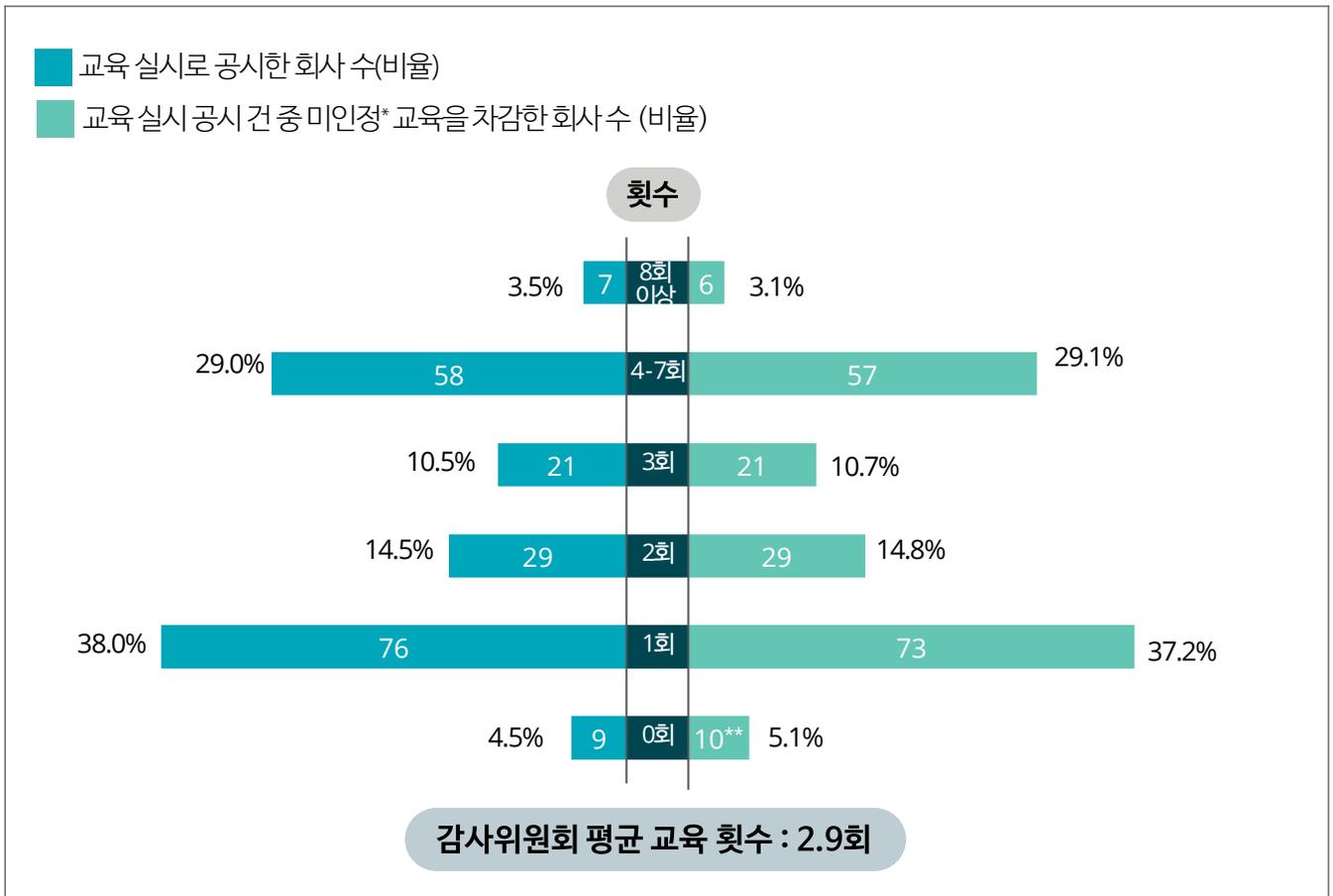
I. 이사회 주요 현황

10. 사외이사 교육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1) 교육 실시 횟수

- KOSPI 200 기업의 FY2022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횟수는 <그림23>과 같으며, 상기의 설명과 같이 공시된 교육의 내용, 범위 및 공시 서식상의 오기재는 교육으로 미인정한 집계도 제시함
- 교육 실시 횟수는 미인정 교육을 차감한 회사 수를 기준으로, '1회'(73사, 37.2%) - '4~7회'(57사, 29.1%) - '2회'(29사, 14.8%) - '3회'(21사, 10.7%) - '0회'(10사, 5.1%) - '8회 이상'(6사, 3.1%) 순으로 조사되었고,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교육을 미실시한 기업은 10사인 것으로 나타남
 - 평균 감사위원회 교육 횟수는 '2.9회'이고, 교육 횟수가 많은 상위 3개 기업은 J사(33회), G사(18회), H사(13회)로 나타남

<그림 23>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횟수⁵⁸⁾



* 단순 감사위원회 안건 설명, 날짜 미기재, 교육 내용 부적합 등

** A사는 교육 실시 횟수를 1회로 공시하였으나 본고에서는 해당 건이 교육으로 미인정되어 미실시 기업으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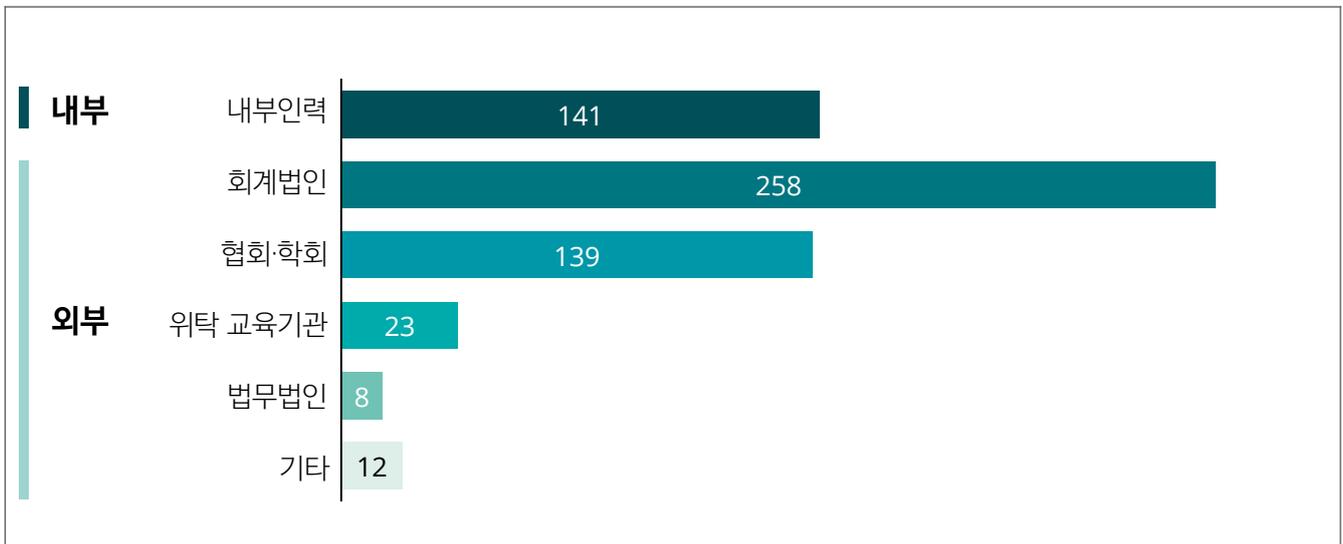
I. 이사회 주요 현황

10. 사외이사 교육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2) 교육 실시 주체

- KOSPI 200 기업의 FY2022 감사위원회 교육은 총 581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교육 주체가 외부인력인 경우는 440회(75.7%), 내부인력인 경우 141회(24.3%)로 나타났고, 전체 교육 실시 주체 기준으로 '회계법인'(258회, 44.4%) - '협회·학회'(139회, 23.9%) - '위탁 교육기관'(23회, 4.0%) - '법무법인'(8회, 1.4%) - '기타'(12회, 2.1%)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교육 실시 주체⁵⁹⁾



59)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사업보고서 공시 정보 참고

I. 이사회 주요 현황

10. 사외이사 교육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3) 교육 주제 및 유형

- 한 회차의 교육이 복합적인 주제를 다룬 경우가 존재하여 주제별로 중복집계한 결과를 <표 15>로 제시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171회, 24%) - '재무보고 감독'(123회, 17%) -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 및 운영'(96회, 14%)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ESG 등) 감독'(81회, 11%) - '회사경영현황 및 업종현황'(69회, 10%) - '법/제도 및 감독 동향'(58회, 8%) - '리스크 감독'(46회, 6%) - '외부감사인 감독'(35회, 5%) - 기타(23회, 3%) 순으로 나타남
- 1순위 주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 감독'이며, 내부회계 교육은 내부회계관리규정의 포함사항으로, 동 규정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점이 영향이 있을 것임
 - 2순위 주제: '재무보고 감독'이며, 감사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감독 영역이자 최근 많이 발생한 부정 및 횡령사건으로 인해 감사위원회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3순위 주제: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 및 운영'이며 신규 선임된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입문교육의 대표적인 주제로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 책임,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이며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근간이 되는 주제임
 - 4순위 주제: 'ESG'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로, ESG정보공시는 비재무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나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감사위원회가 주의를 살펴야 하는 영역임

<표 15>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교육 주제⁶⁰⁾

구분	내용	횟수 (비율)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171 (24.1%)
2	재무보고 감독	123 (17.3%)
3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 및 운영	96 (13.5%)
4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ESG 등) 감독	81 (11.4%)
5	회사경영 및 업종 현황	69 (9.7%)
6	법/제도 및 감독 동향	58 (8.2%)
7	리스크 감독	46 (6.5%)
8	외부감사인 감독	35 (4.9%)
9	기타	23 (3.2%)
10	내부감사 감독	5 (0.7%)
11	교육내용 부적합 주제	2 (0.3%)
합계		709 (100%)

60)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사업보고서 공시 정보 참고

I. 이사회 주요 현황

10. 사외이사 교육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 한 회차의 교육이 '단일주제'만 다룬 경우와 2개 이상의 '복합주제' 를 다룬 경우를 집계한 결과를 <표 16>에서 제시하였으며, 단일주제만 다룬 경우는 479회(82.4%)이고, 복수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룬 경우는 102회(17.6%)로 나타남

<표 16>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단일/복합주제⁶¹⁾

구분	횟수(비율)
단일주제	479 (82.4%)
복합주제(2개 이상)	102 (17.6%)

- 한 회차의 교육이 '입문교육' 과 '보수교육'에 해당하는 주제를 모두 다룬 경우가 존재하여 교육유형별로 중복 집계한 결과를 <표 17>에서 제시하였으며 '보수교육'(379회, 62.3%)이 '입문교육'(229회, 37.7%)보다 많이 실시된 것으로 조사됨

<표 17>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교육유형(입문/보수)⁶²⁾

구분	횟수(비율)
입문교육	229 (37.7%)
보수교육	379 (62.3%)

I. 이사회 주요 현황

10. 사외이사 교육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교육 주제

-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교육주제는 <표18>에서 제시하였으며, '신규회계원칙 및 감사요구사항'(97%) - '재무·유동성 리스크'(65%) - '리스크 감독'(62%) - '사이버보안 리스크'(61%) - '데이터 프라이버시'(56%) - '윤리·컴플라이언스'(48%) - '기업별 규정 및 이슈'(37%) - '자산배분'(33%) - '반부패 이슈'(31%) - '지정학적 리스크' (28%) - '위기관리'(25%) 순으로 나타남
- 사안별로 세부적인 주제가 제공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위기관리 등 국내에 비해 폭 넓은 주제의 교육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임

<표 18> 글로벌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교육 주제 ⁶³⁾

구분	내용	비율 (중복응답, 총 109개)
1	신규 회계 원칙/감사 요구사항	97%
2	재무/유동성 리스크	65%
3	리스크 감독	62%
4	사이버보안 리스크	61%
5	데이터 프라이버시	56%
6	윤리/컴플라이언스	48%
7	기업 별 규정 및 이슈	37%
8	자산 배분	33%
9	반부패 이슈	31%
10	지정학적 리스크	28%
11	위기관리	25%

63) Deloitte 글로벌, 「Back to basics, Board education and evaluations」, 2022.09, 22년 7월 기업 거버넌스 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가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15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조사결과, 응답자는 주로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 고문변호사 및 기타사내 거버넌스 전문가로 구성됨

I. 이사회 주요 현황

11.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횟수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논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배석 없는 대면회의를 권고함
 - 재무보고 과정 전반에 감독 책임이 있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원활하고 개방적인 소통체계를 갖추어야 함

<표 19>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관련 모범규준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V.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
지배구조 모범규준 IV.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 회의와는 별도로 외부감사인과 개별적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에 따라 관련 공시가 강화되는 추세임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5-2-1-①-4)에 따라 사업보고서(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1.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주요 논의내용, 방식, 참석자, 일자를 공시해야 함
 - '22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항목에 해당하며,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재무사항 주요미흡사례로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 사이에 논의사항이 있었음에도 관련 기재 누락이 있음⁶⁴⁾

<표 20>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간 주요 논의내용 예시⁶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또는 감사 보수, 시간 및 필요한 인력에 관한 논의 • 계획된 검토 또는 감사 범위 및 시기에 대한 논의 • 부정위험과 관련하여 지배기구 감시기능에 대한 논의 • 검토 또는 감사에서의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에 대한 논의 •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관련 논의 • 검토 또는 감사시 미수정 왜곡표시 및 후속사건 관련 논의 • 검토 또는 감사의견의 변형 가능성 관련 논의 등

64) 금융감독원, 「2022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 안내」, 2023.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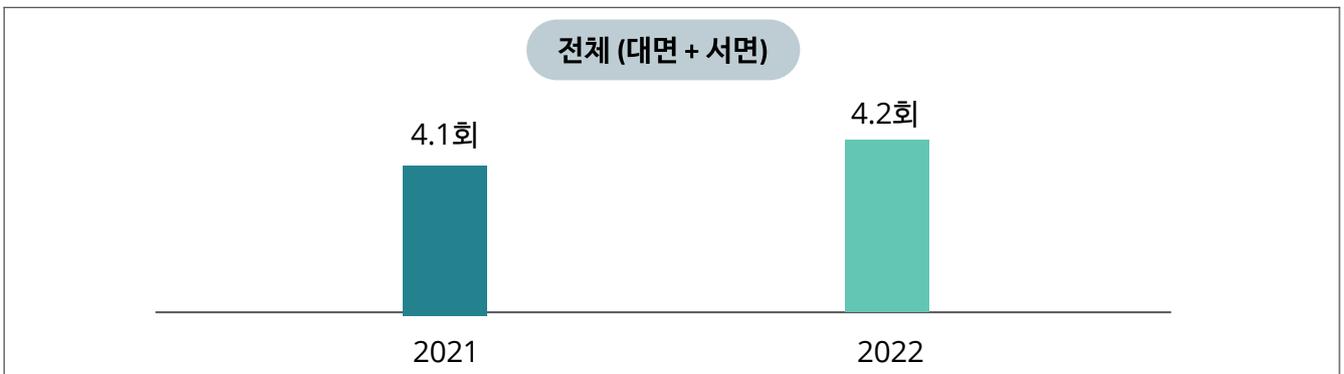
65)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023.06

I. 이사회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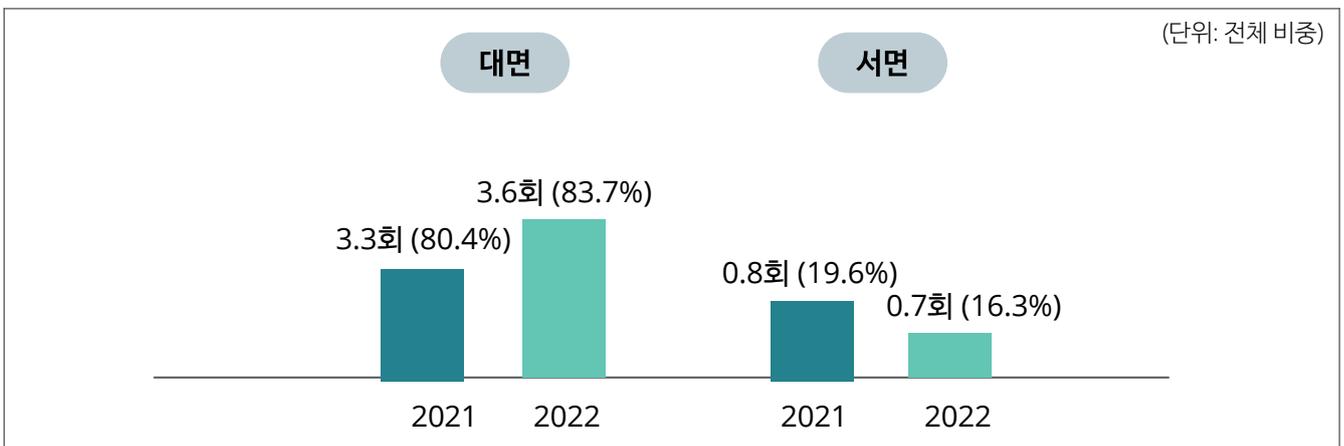
11.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 FY2022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평균 횟수는 4.2회로 전년 4.1회 대비 0.1회 증가함
 - 대면 커뮤니케이션 평균 횟수는 3.6회로 전체 커뮤니케이션에서 83.7%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전기 3.3회(80.4%) 대비 0.3회(3.3%p) 증가한 수치임

<그림 25> FY2022 vs.FY2021 KOSPI 200 기업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평균 횟수 ⁶⁶⁾



<그림 26> FY2022 vs.FY2021 KOSPI 200 기업 외부감사인과의 대면 및 서면 커뮤니케이션 평균 횟수 ⁶⁷⁾



66,67)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FY2021 사업보고서 공시 정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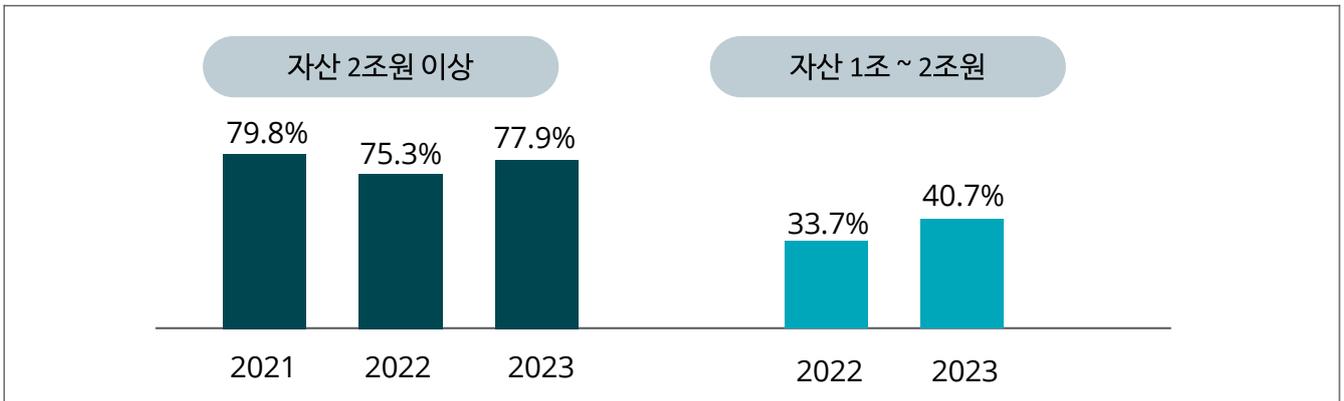
I. 이사회 주요 현황

11.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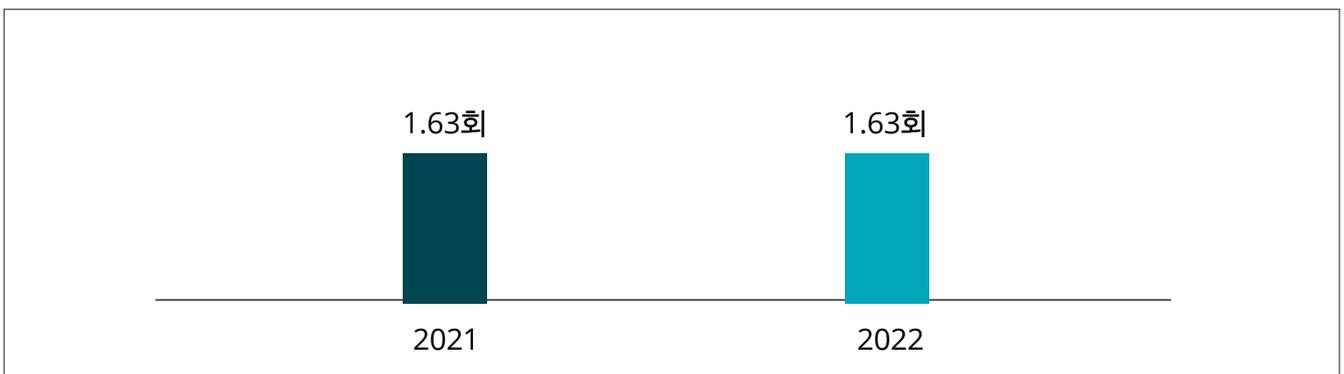
- FY2022, FY202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의 핵심지표 준수 현황 조사결과도 함께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77.9%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한다고 기재하였으며 전기 대비 2.6%p 상승함
 - 서면보고를 제외한 대면 또는 화상회의에 한해 준수여부 판단기준이 강화된 바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2023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40.7%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한다고 기재함

<그림 27>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⁶⁸⁾



- FY2022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중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 논의의 평균 횟수는 1.63회로 전년과 동일함

<그림 28> FY2022 vs. FY2021 KOSPI 200 기업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중 KAM 논의의 평균 횟수⁶⁹⁾



68)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1년~2023년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지표 14번 분석

69)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FY2021 사업보고서 공시 정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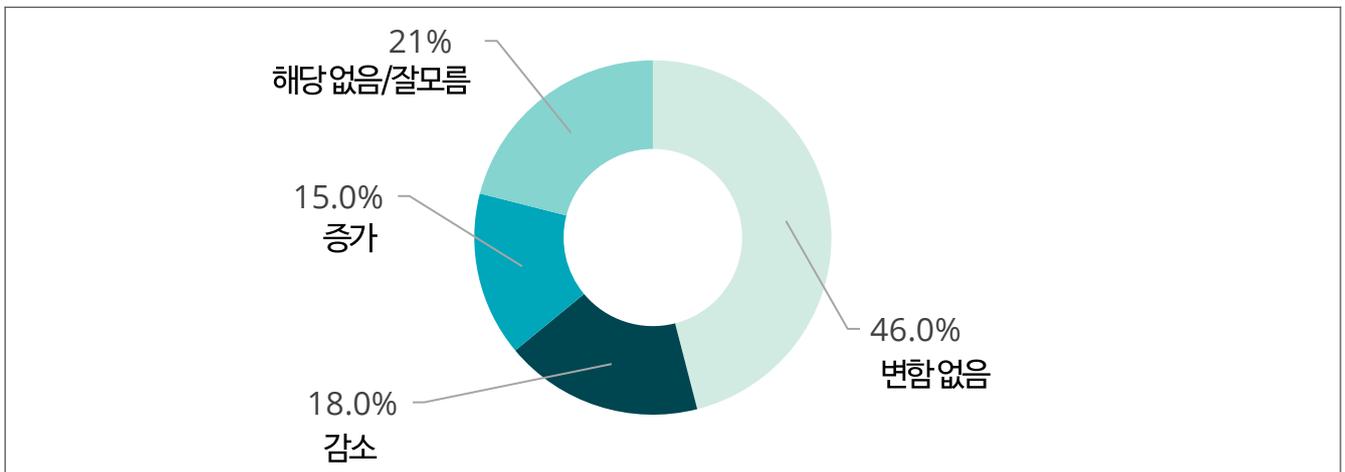
I. 이사회 주요 현황

11.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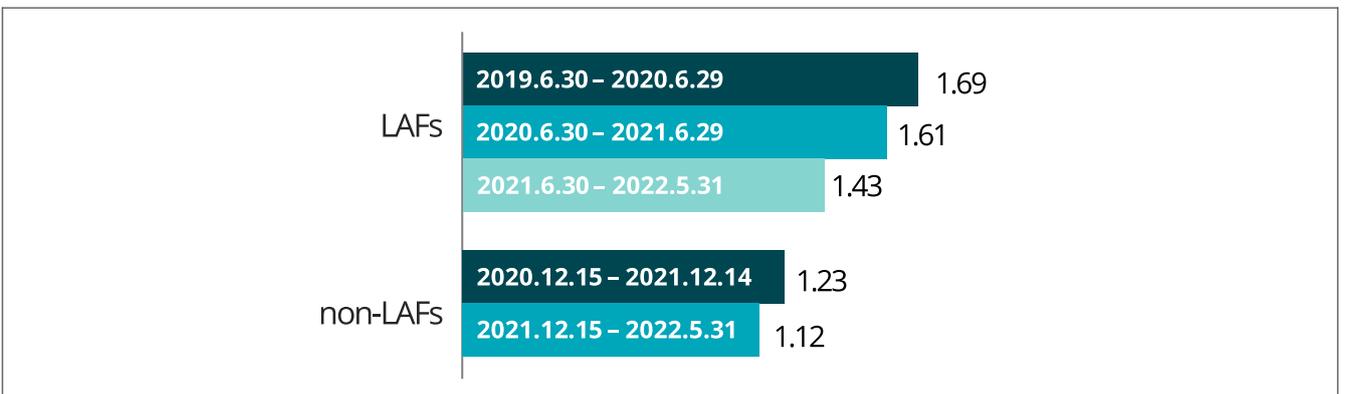
-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15%는 전년 대비 외부감사인과 핵심감사사항(Critical Audit Matters, 이하 'CAM') 논의에 할애한 시간이 증가하였고, 46%는 전년과 동일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많은 글로벌 기업이 CAM 논의를 통한 인사이트 발굴에 노력함을 시사함

<그림 29>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전년 대비 외부감사인과의 CAM 논의 시간 ⁷⁰⁾



- PCAOB 보고서 ⁷¹⁾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상의 평균 CAM 개수는 1.42개이며, Large Accelerated Filer(이하 'LAF' ⁷²⁾)와 Non-Accelerated Filer (이하 'non-LAF' ⁷³⁾) 기준에 따른 평균 CAM 개수는 <그림30>에서 제시함
 - LAF 감사에 참여한 파트너의 41%가 CAM이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한다고 답함

<그림 30> 미국 감사위원회 FY2021, FY2022 평균 CAM 개수 ⁷²⁾



70) Deloitte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 246명 대상

71) Public float가 7억 달러 이상인 상장기업, 4) Public float가 7천5백만 달러 미만인 상장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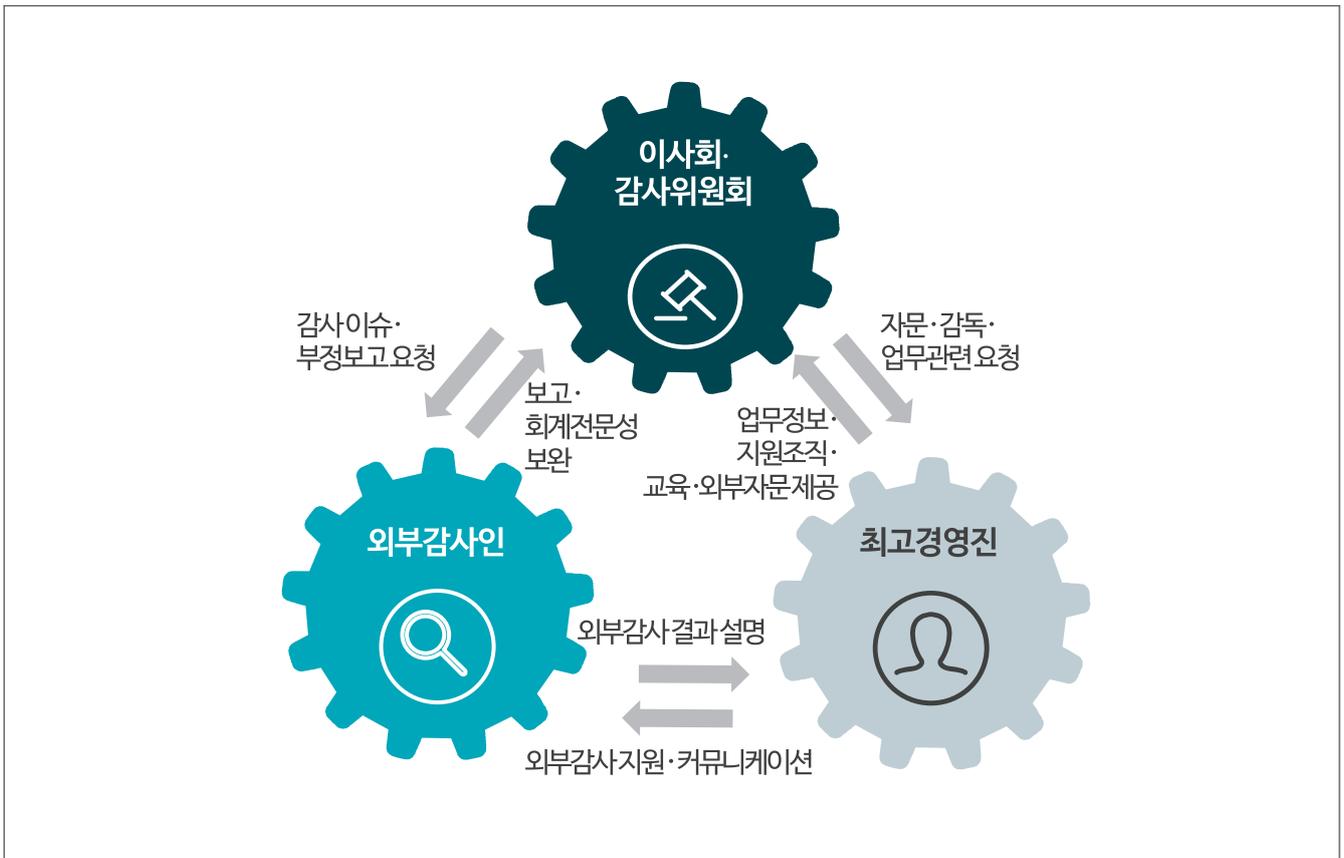
72) PCAOC, 「Interim Analysis Report: Further Evidence on the Initial Impact of Critical Audit Matter Requirements」, 2022.12.7

I. 이사회 주요 현황

12. 결론

- 이상과 같이 국내외 이사회의 현황파악과 관련한 11가지 정보공시 항목을 가지고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 본 정보는 주로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실제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지만, 국내 이사회 현황을 먼저 짚어보고 추후 기업지배기구의 발전방향을 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음
- 이사회는 경영진, 외부감사인 및 지원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지속가능성장 및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

<그림 31> 이사회·감사위원회 - 최고경영진 - 외부감사인 간 바람직한 역할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회계제도 보완방안 마련¹⁾²⁾

-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회계제도 보완 -

요약

-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함
- 기존에 도입된 제도들에 대해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며, 제도별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마련됨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지정감사제 합리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보완 방안을 마련함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함
 - 금번 방안은 그간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에서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됨
 - * 금융위, 금감원, 학계(2), 기업계(3), 회계업계(3)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총 6차례 회의 개최(22.9~12월)
- 2017년에는 대규모 회계부정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하에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및 책임을 강화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의 제도가 신설되며,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한 회계개혁이 5년을 경과함
-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며, 제도별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마련됨

회계제도 보완방안

- 금번 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현행 회계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비용 대비 투자자 편익이 크지 않은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회계투명성을 유지하면서 5년 전 도입한 제도들의 시장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1) 금융위원회,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2023.6.12

2) 자본시장국, 기업회계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2023.6.12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회계제도 보완방안 마련

1)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①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시기 조정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이 5년 유예됨('24→'29년)

- 조치를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감독지침 마련 등이 필요함

<표 1>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시기 조정 개선사항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사업연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체 상장사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연결 내부회계')가 도입*되어 외부감사 실시 예정 * ('23) 자산 2조 이상 → ('24) 자산 5천억 이상 → ('25) 자산 1천억원 이상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중소형 상장사는 연결 내부회계 도입비용이 부담으로 작용 - 연결 내부회계의 구축·평가 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무 혼선 발생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에 따른 역량 차이를 감안해 중견·중소 기업의 연결 내부회계 도입시기를 조정하고, 연결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기업부담을 감안하면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도입 시기를 5년간 유예('24년→'29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현행 일정('23년)대로 연결 내부회계 도입 ✓ 내부상황에 따른 요청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 허용 - 연결 내부회계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도 위주'로 감리

<그림1> 자산규모별 연결 내부회계 도입 시기 조정

연도	2023	2024	2025	~	2029	2030	2031~
현행	2조 ↑	5천억 ↑	5천억 ↓				
개선	2조 ↑	5년 유예			5천억 ↑	5천억 ↓	
			전체 도입('25년~)				전체 도입('30년~)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회계제도 보완방안 마련

②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 부담 경감

- 내부회계 외부감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잠재력 있는 회사의 상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중소 비상장사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함
 - 조치를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함

<표 2>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 부담 경감 개선사항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비상장사(자산 1~5천억원)는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과 감사비용이 동시에 발생하여 부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비상장사(자산 1~5천억)에 대해서는 신규 상장시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기간 동안은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 받음

2)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① 직권지정사유 축소

- 상장사 지정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부 직권지정사유를 조정함
 - 조치를 위해 외부감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표 3>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 부담 경감 개선사항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개혁(17년)으로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에 대한 직권지정사유가 큰 폭으로 확대(11→2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사유 간 중복내용이 있고,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까지 지정함에 따라 상장사 지정비율(주기적 지정 포함)이 50% 이상 수준으로 과도하게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 관련 사유는 폐지·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기준 미달' 사유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폐지(2개)하고, 감사절차 등 '단순 경미한 절차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14개)

② 주기적 지정제 보완

- 현행 제도가 충분히 시행된 이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개선여부 검토가 필요함

<표 4>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 부담 경감 개선사항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사와 일부 대형비상장사는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그 후 3년간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 후 3년 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분간은 현행 주기적 지정제(6+3)를 존치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 재검토 예정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회계제도 보완방안 마련

3)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①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

- 표준감사시간이 법정 최소감사시간이 아님에도 일부 지정 감사인들이 표준감사시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폐지하여 가이드라인로서의 성격을 명확화 함
 - 한공회 회칙 및 행동강령 개정이 필요함

<표 5>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 개선사항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감사시간은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으로 적정 감사 시간 확보를 위한 지표(guide)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법령³⁾과 한공회 내규에 강행규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도입취지와 달리 '법정시간' 또는 '최저감사시간'으로 인식되는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공회 회칙과 행동강령 상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폐지하여 업무관행 개선

②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중립성 제고

-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15명)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함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

<표 6>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중립성 제고 개선사항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공회장이 위촉한 위원 9명과 금감원이 추천한 위원 1명이 출석하면 기업계 위원(5명) 없이도 개의 및 결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은 기업계 5인, 회계법인 5인, 회계정보이용자 4인, 금감원 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축소(4명→2명)하고, 추천기관을 한공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

3)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10호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회계제도 보완방안 마련

3)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③ 기업과 회계법인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 감사인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감사예정시간을 책정하고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표 7> 기업과 회계법인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개선사항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감사계약시 기업에 감사투입예정시간과 그에 근거한 감사보수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감사시간 산출내역과 감사내용 등 세부사항 확인이 어려워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적정성 파악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단계별 감사시간 산출내역, 시간당 감사보수, 감사투입인력 현황, 피감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전기 감사시간과의 차이 발생 이유 등

3) 지정감사제 운영 합리성 제고

① 독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여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시 정부에 지정취소 및 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도록 함

<표 8> 독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개선사항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상장합·코스닥협)를 운영 중이지만 활용도가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센터의 조정 기능과 독립성에 대한 기업들의 의구심 및 불이익 우려 등에 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거래소, '22.9월 설치)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권한남용행위 적발시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자 징계 건의

②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적격성이 떨어지는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임(외감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사항)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회계제도 보완방안 마련

<표 9>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개선사항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 선임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감사팀을 구성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하지만 지정 감사시에는 감사팀이 회계법인 편의대로 구성되는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회사 지정감사시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이 전무할 경우 차기년도 지정 기업 수 차감

③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 고연차 회계사 점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인력 대비 적정한 수의 기업이 배정되도록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을 개선함(외감규정 개정사항)

<표 10>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개선사항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은 회계법인에 경력기간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연차 회계사가 많을수록 지정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여 인력 대비 많은 기업이 배정되며 이는 감사품질 악화요인으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기업이 배정되도록 고연차 회계사 점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④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 발생 부담 완화

- 동일 사유로 지정감사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년~3년의 최소 자유선임기간을 보장함(외감규정 개정사항)

<표 11>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 발생 부담 완화 개선사항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사 등은 직권지정기간(3년) 중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직권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발생 <p>* ① 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 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③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 보장*(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행 지정처분 여부는 선행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회계제도 보완방안 마련

<그림2> 자산규모별 연결 내부회계 도입 시기 조정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현행	재무기준A				재무기준B			
		총 지정감사 6년 (A사유('23~'25년) + B사유('26~'28년))						
개선안		지정감사기간 3년			자유선임기간 3년			

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는 폐지 전까지 지정 여부 판단기준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제표로 변경함
 -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는 폐지(외부감사법 개정사항)할 예정이지만 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규정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선행 조치함

<표 12>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개선사항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감법령상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주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도가 낮은 종속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악화에도 지배기업이 직권지정 대상이 되는 등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지배기업 본연의 사업성과를 지정여부 판단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⑥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 감사인 지정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를 위해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각각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비효율성을 개선함(외감규정 개정사항)

<표 13>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사항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를 위해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시 지배·종속기업에 각각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빈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지배·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감사인을 동일하게 지정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상반기 중 추진하고, 법률, 시행령 등의 입법 필요사항은 올해 4분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임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회계제도 보완방안 마련

<표 14> 추진 과제별 향후일정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1.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제도 개선		
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조정	시행령 개정	'23.4분기
② 연결 대상 종속기업 기준 명확화	감독지침 등 마련	'23.3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범위 연결기준으로 일원화	시행령 개정	'23.4분기
•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부담 경감	법 개정	'23.4분기
2.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합리화		
•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법·시행령 개정	'23.4분기
• 주기적 지정제 보완	추후 검토	-
3.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	한공회 회칙·행동강령 개정	'23.2분기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중립성 강화	시행령 개정	'23.4분기
• 기업·회계법인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시행세칙 개정	'23.3분기
4. 지정감사 부담 완화		
•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중기 회계지원센터내 운영	'23.2분기
•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외감규정/시행세칙 개정	'23.3분기
•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외감규정 개정	'23.3분기
•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 부담 완화	외감규정 개정	'23.3분기
•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외감규정 개정	'23.3분기
•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외감규정 개정	'23.3분기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2) 3)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

요약

-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동 시행령 및 2개의 하위규정이 지난 5월 2일부터 시행됨
- 본 개정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 및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이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은 '대형비상장사 기준 상향(자산 1천억원→5천억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독 내실화',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로 구성됨

개정배경

-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동 시행령 및 2개의 하위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외감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이하 '포상규정')이 지난 5월 2일부터 시행됨
- 본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 및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이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중소기업에게 대형 상장사와 동일한 회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에 따라 중소기업들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방안도 마련함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대형비상장사 기준 상향(자산 1천억원 → 5천억원)

- 대형비상장사의 기준이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 (2023사업연도부터 적용)

<표 15> 대형비상장사 기준 상향 개정사항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비상장사(자산 1천억원 이상)는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적으로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사 규제가 적용 -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사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합리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자산 1천억원 기준을 유지 - 비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도 조정됨

1)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3.4.24

2)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2022.12.21

3) 금융위원회, 「회계신뢰는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022.10.6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2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독 내실화

-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

<표 1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독 개정사항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의 비적정의견 표명에 따른 페널티가 오히려 경영진의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 시정을 막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외감규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조치 1단계 가중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준거기준이 운영되어 기업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닥 시장조치 사유에서 내부회계 감사의견 관련 내용을 완화하고 회사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취약점을 자발적으로 공시하거나, 개선 시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

-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 경영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동 제도 운영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임⁴⁾

<표 17> 현 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체계

구분	설계 및 운영 관련	평가 및 보고 관련
원칙적 적용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자율적 지침	설계·운영 적용기법(일반, 중소기업), 설계·운영 적용사례	평가·보고 적용기법(일반, 중소기업)

↓
규정화 대상

-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실효성 낮은 공시를 강화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유도함
 - (운영실태보고서) 경영진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행한 내부통제활동을 포함토록 상세한 공시서식을 마련함
 - (평가보고서) 내부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유효성 평가를 위해 수행한 감독활동과 관련한 공시서식을 개발·적용함
 - 운영실태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협의 및 자금부정위험 관련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등을 공개

<표 18>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 개정사항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공시 실효성이 낮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필수 첨부서류)를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공시를 내실화하고, 경영진과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유도

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2023.5.15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2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3)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가 강화됨

<표 19> 회계부정행위 신고 개정사항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증선위 제재조치 완화(과징금 포함) 및 신고포상금 지급은 가능하나 엄격한 지급기준과 실제 보상금액이 낮아 내부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할 유인이 부족함 -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음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 ※ 포상금 산정액 = 등급별 포상금 기준금액 × 차감요소를 반영한 기여도

<표 20>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조치 감면 요건

내용
①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
② 신고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기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③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향후일정

- 본 개정은 5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대형비상장사 기준 상향은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3사업연도('23.1.1일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됨
-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을 확정할 계획임

<표 2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의 향후 일정

구분	내용
5월 12일(1차 자문위)	• 자문위 운영방안 및 평가·보고지침 제정 방향 논의
6~7월(2·3차)	• 평가·보고지침 초안 마련 및 자문위 논의
8월(4차 자문위)	• 평가·보고지침(안) 마련 및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9월	• 외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 세부 일정은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⁵⁾⁶⁾

요약

- 지난 6월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
- 금번 개선방안은 내부통제 규율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금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것에 방향성을 둠
-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의 사전 확정', '운영 준수 등 일련의 프로세스 전체를 규율대상에 포함',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 명시'임

추진배경

- 지난 6월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
 -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사에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였으나 연이은 금융사고 발생에 현행 제도 및 운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현행 규율이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표 22> 내부통제 제도개선 기본방향

구분	내용
책임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이 사전에 자신이 책임자였음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존재함
규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령은 내부통제 기준마련의 형식적 의무만 부과하고 실제 운영방식에 대한 규율은 없음
이사회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 회의와는 별도로 외부감사인과 개별적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내부통제 책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지만,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제약이 큼

내부통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금번 개선방안은 내부통제 규율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금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것에 방향성을 둠

5) 금융위원회,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에 주력,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3.6.22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사 지배구조법 상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2023.06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표 23> 내부통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내용	
1. 금융사 스스로 각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이 실제 업무수행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은 가능하나 통제관리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여 하급자의 업무활동을 관리 감독하도록 유도
2. 내부통제 기준 마련뿐 아니라 운영 준수 등 일련의 프로세스 전체를 규율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은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 개선 등 단계별로 관리조치를 실행함 충분한 관리조치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 경영진의 제재수준의 감경·면제가 가능하도록 함
3. 이사회에 내부통제 책임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이 있는 이사회에 내부통제 의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내부통제의 미흡·실패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들의 이사회에 대한 책임추궁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지배구조의 원활한 작동을 유도함

내부통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1)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

□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임내용을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임

- 지배구조법상 임원을 대상으로 함(이사·감사·업무집행책임자 등, 통상 C-레벨)
 - 단, 사외이사의 정보접근성 제약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적용대상에서 우선 제외
- 책무는 금융사의 법령준수,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함
 - 책무구조도상 임원에게 의무적으로 책무를 배분해야 할 업무영역은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업 부문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시행령에서 예시적으로 명시할 예정
- 특정 직책을 가진 임원의 책임내용을 지정함
 - 지주회사 임원이 자회사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해당 회사가 아닌 타사 임원이 업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임원도 표기해야 함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 각 임원은 해당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됨

<표 24> 직책·책무 변경시 담당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구분	현행	개선
임원의 자격요건	소극적 결격요건만 열거	해당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적극적 자격요건 추가
자격요건확인	임원의 신규선임 시에만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신규선임 임원뿐만 아니라, 기선임 임원의 직책 변경시에도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가 마련해야 하며,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됨
 - 대표이사는 책무의 중복 공백 누락 등 작성 미흡,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불일치 등에 대한 거짓작성에 대해 책임이 있음
-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에 제출되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는 개념은 아님
 - 다만 필요시 감독당국은 시정요구가 가능함

2)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 내부통제 관리의무란, 책무구조도상 해당 임원이 소관책무 범위 내에서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의미함
- 특히, 내부통제 전반의 책임자인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도 명확히 규율화하여, 대표이사의 책임의식을 고취함
-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업특성,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으며, 내부통제의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책임이 부과됨

3)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

- 이사회 역할 명확화를 위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수립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함
 - 이사회는 회사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부담함

<표 25> 책무구조도상 임원 및 이사회 역할 구분

구분	내용
개별 임원	• 소관 영역별로 구체적인 관리조치(management)를 취함
이사회	• 내부통제체계 감시(oversight)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 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여 내부통제 방침,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며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요구할 수 있음

4) 제재 및 면책기준

-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실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관리의무 위반으로 신분제재를 부과함
 -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 감독당국이 관리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임원의 책임을 묻는 상황을 미리 고시함으로써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함

향후 일정

- 방안발표 이후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지속한 후 신속한 입법 추진 예정이며, 적용대상별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단계적 시행 예정임

<표 26>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향후 일정

구분	내용
1단계	• 은행·금융지주 (공포 후 1년 이후)
2단계	• 대형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보험회사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
3단계	• 일부 지배구조 규율이 미적용*되는 중소형 금융회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날부터)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소수주주권 행사 등

※ 동 제도개선 방안은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정·변경되어 입법화될 수 있음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hansu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junoh@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